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1편 역사와 교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미감리회·남감리회 선교부 선교 시대</p> <p>[2] 1. 복음 수용과 선교사 내한 1870~1880년대 새로운 사상과 종교를 갈망하던 한국인들은 만주와 일본에서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이들이 해외에서 출판한 한글 성서는 매서인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읽혔고 그 결과 많은 세례 지원자들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883년 9월 미감리회 볼티모어연회 소속인 가우처(John F. Goucher) 목사는 외교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이던 민영익을 만난 후 한국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가우처 목사는 미감리회 국외선교부에 한국 선교 착수를 촉구하였고 일본 주재 미감리회 선교사 맥클레이(Robert S. Maclay)로 하여금 한국 선교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중국과 일본에서 감리회선교를 개척했던 맥클레이는 1884년 6월 24일 내한해서 ‘학교와 병원 사업을 해도 좋다.’는 국왕의 허락을 받았다. 이에 미감리회 국외선교부는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부부와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부부를, 국외여선교부는 스크랜턴 대부인(Mary F. Scranton)을 초대하여 한국 선교사로 임명하였고, 이들 중 아펜젤러 부부가 제일 먼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내한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편 역사와 교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미감리회·남감리회 선교부 선교 시대</p> <p>[2] 1. 복음 수용과 선교사 내한 1870~1880년대 새로운 사상과 종교를 갈망하던 한국인들은 만주와 일본에서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이들이 해외에서 출판한 한글 성서는 매서인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읽혔고 그 결과 많은 세례 지원자들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883년 9월 미감리회 볼티모어연회 소속인 가우처(John F. Goucher) 목사는 외교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이던 민영익을 만난 후 한국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가우처 목사는 미감리회 국외선교부에 한국 선교 착수를 촉구하였고 일본 주재 미감리회 선교사 맥클레이(Robert S. Maclay)로 하여금 한국 선교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중국과 일본에서 감리회선교를 개척했던 맥클레이는 1884년 6월 24일 내한해서 ‘학교와 병원 사업을 해도 좋다.’는 국왕의 허락을 받았다. 이에 미감리회 국외선교부는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부부와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부부를, 국외여선교부는 스크랜턴 대부인(Mary F. Scranton)을 초대 한국 선교사로 임명하였고, 이들 중 아펜젤러 부부가 제일 먼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내한하였다.</p>	<p>* ‘초대하여’→‘초대’의 오기</p>
<p>[3] 2. 미감리회의 한국 선교 미감리회의 선교는 교육과 의료, 문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은 한국 근대 교육의 요람이 되어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였으며, 시병원과 보구여관은 한국 근대 의료사업의 요람이 되었다. 감리회 출판사에서</p>	<p>[3] 2. 미감리회의 한국 선교 미감리회의 선교는 교육과 의료, 문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은 한국 근대 교육의 요람이 되어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였으며, 시병원과 보구여관은 한국 근대 의료사업의 요람이 되었다. 감리회 출판사에서</p>	<p>※ 수정 근거자료 1886. 4. 25 아펜젤러 선교사 일기 1886. 6. 미감리회 연회 보고서</p>

현행	개정안	비고
<p>서 퍼낸 성서와 서적은 복음 전도에 유효한 도구가 되었고 한글 문화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1887년 7월 24일 배재학당 학생 박중상이 첫 감리교 세례교인이 되었고, 1887년 10월 9일 서울에서 오늘의 정동제일교회의 모체인 ‘벤엘예배당’이 설립되었다. 1897년 서울과 인천, 평양에서 엽윗청년회가 창설되었는데 이는 오늘의 감리교 청년회, 청장년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의 모체다. 선교 초기부터 신학반과 신학회를 조직하고 한국인 목회자 양성을 추진하여 1901년 최초 한국인 목사로 김창식 목사, 김기범 목사를 배출했다. 미감리회에서는 1902년 하와이 이민 선교를 시작으로 북만주와 몽고, 일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p>	<p>성서와 서적은 복음 전도에 유효한 도구가 되었고 한글문화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u>아펜젤러와 스크랜턴은 1885년 7월 29일 정동에 예배처를 마련하였고, 이 신앙공동체는 아펜젤러 집례로 1885년 10월 11일 첫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1887년 7월 24일 배재학당 학생 박중상에게 첫 세례를 거행하였으며, 1887년 10월 9일 남대문안에 ‘벤엘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예배처소를 마련하여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였다.</u> 1897년 서울과 인천, 평양에서 엽윗청년회가 창설되었는데 이는 오늘의 감리교 청년회, 청장년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의 모체다. 선교 초기부터 신학반과 신학회를 조직하고 한국인 목회자 양성을 추진하여 1901년 최초 한국인 목사로 김창식 목사, 김기범 목사를 배출했다. 미감리회에서는 1902년 하와이 이민 선교를 시작으로 북만주와 몽고, 일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p>	<p>정동제일교회 모체라고 하는 벤엘예배당은 조선인들만의 예배모임이라고 확인됨. 현재는 소멸되고 없음.</p> <p>* 엽윗-> 엽윗, 오타교정</p>
<p>[5] 4. 부흥운동과 토착 신학 1903년 원산에서 남감리회 선교사 하디(Robert A. Hardie)의 회개로 시작된 부흥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쳐 1909년 백만명구령운동으로 연결되었다. 한국인들은 이 부흥운동을 통해 회개와 중생과 성결을 체험하였고,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신앙체험을 바탕으로 복음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려는 토착 신학이 감리교 신학자들에 의해 수립되었다. 노병선 목사는 기독교를 동양과 서양을 포괄하는 ‘하늘의 종교’이자 한국의 근대화를 촉진시킨 ‘은혜의 종교’로 변증하였다. 최병헌 목사는 동양 전통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기독교의 절대성’을 규명하였다. 이 같은 토착 신학은 성서와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 동양의 문화·종교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여 수구 세력의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시켰으며, 기독교가 민족 문화와 종교 전통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문화선교의 길을 열어 주었다.</p>	<p>[5] 4. 부흥운동과 토착 신학 1903년 원산에서 남감리회 선교사 하디(Robert A. Hardie)의 회개로 시작된 부흥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쳐 1909년 백만명구령운동으로 연결되었다. 한국인들은 이 부흥운동을 통해 회개와 중생과 성결을 체험하였고,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신앙체험을 바탕으로 복음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려는 토착 신학이 감리교 신학자들에 의해 수립되었다. 노병선 <u>전도사</u>는 기독교를 동양과 서양을 포괄하는 ‘하늘의 종교’이자 한국의 근대화를 촉진시킨 ‘은혜의 종교’로 변증하였다. 최병헌 목사는 동양 전통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기독교의 절대성’을 규명하였다. 이 같은 토착 신학은 성서와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 동양의 문화·종교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여 수구 세력의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시켰으며, 기독교가 민족 문화와 종교 전통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문화선교의 길을 열어 주었다.</p>	<p>*‘목사’→‘전도사’로 수정</p> <p>평신도 본처전도사로만 시무하였으며,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음.</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2장 교리</p> <p>제 4 절 사회신경</p>	<p>제2장 교리</p> <p>제 4 절 사회신경</p> <p>【00】 1. 사회신경(1930년)<신설></p> <p><u>인류는 겨레와 나라의 차별이 없이 천지의 주재시며 오직 하나 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인류는 형제주의 아래에서 이 사회를 기독교주의의 이상사회로 만듬이 우리 교회의 급무로 믿어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회신경을 선언하노라.</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종의 동등 권리와 동등 기회를 믿음. 2. 인종과 국적의 차별 철폐를 믿음. 3. 가정생활의 원만을 위하여 일부일처주의의 신성함을 믿으며 정조문제에 있어 남녀간 차별이 없음을 믿으며 이혼의 불행 을 알고 그 예방의 방법을 강구 실행함이 당연함을 믿음. 4. 여자의 현대 지위가 교육, 사회, 정치, 실업 각계에 있어서 항상 발달하여야 될 것을 믿음. 5. 아동의 교육받을 천부의 권리를 시인하여 교육에 힘쓰고 아 동의 노동 폐지를 믿음. 6. 인권을 시인하여 공사창 제도 기타 인신매매의 여러 가지 사 회제도를 반대함이 당연함을 믿음. 7. 심신을 쾌망케 하는 주초와 아편의 제조판매 사용을 금지함 이 당연함을 믿음. 8. 노동 신성을 믿고 노동자에게 적합한 보호와 대우가 당연함 을 믿음. 9. 정당한 생활유지의 품삯과 건강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노동 시간을 가지게 함이 당연함을 믿음. 10. 7일중 1일은 노동을 정지하고 안식함이 필요함을 믿음. 11. 노동쟁의에 공평한 중재제도가 있음이 필요함을 믿음. 	<p>*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교리 적 선언과 함께 사회신경도 역사 적 문서로서 장정에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음</p>

현행	개정안	비고
	<p>12. 빈궁을 감소케 함과 산업을 진흥케 함을 믿음.</p> <p>13. 불건전한 오락과 허례 사치 등으로 금전과 시간을 낭비함은 사회에 대한 죄악임을 믿음.<신설></p>	
<p>[57] 사회신경</p> <p>감리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사회신경을 채택하고 이를 신앙의 실천적 목표로 삼아,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는 데 이바지하여 왔다. 우리는 오늘의 시대가 안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을 앞에 놓고 우리의 사회적 삶의 새로운 실천 원칙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하 생략></p>	<p>[57] 2. 사회신경(1997년) <개정></p> <p>감리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사회신경을 채택하고 이를 신앙의 실천적 목표로 삼아,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는 데 이바지하여 왔다. 우리는 오늘의 시대가 안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을 앞에 놓고 우리의 사회적 삶의 새로운 실천 원칙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하 좌동 ></p>	<p>※ 1997년 개정된 것이므로 년도 삽입</p>
<p style="text-align: center;">부 록</p> <p style="text-align: center;">2. <u>연합속회</u> 총칙(영국감리교회)</p> <p>[60] 초대적 그리스도교의 정신과 교리가... ...(중략)이로 말미암아 온 영국 안에 있는 웨슬리 교회의 기초가 되었으니 그 <u>연합속회</u>의 총칙은 아래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록</p> <p style="text-align: center;">2. <u>연합신도회</u> 총칙(영국감리교회) <개정></p> <p>[60] 초대적 그리스도교의 정신과 교리가..... ...(중략)... ...이로 말미암아 온 영국 안에 있는 웨슬리 교회의 기초가 되었으니 그 <u>연합신도회</u>의 총칙은 아래와 같다. <개정></p>	<p>※ 번역오류정정</p> <p>The United Society를 연합신도회로 번역 정정함</p> <p>연합속회 → 연합신도회</p>
<p>[62] 제1은 남을 해롭게 하지 말며 흔히 하기 쉬운 각양 악한 것을 피할 것이다.</p> <p>그 예를 들면</p> <p>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는 것과,</p> <p>늘 하는 사업이나 매매하는 일로 주일을 범하는 것과,</p> <p>필요한 일(신병 같은 것) 밖에 술을 마시는 것이나 취하는 것과,</p> <p>싸움과 시비와 떠들음과 형제간에 송사하는 것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나, 욕을 욕으로 대하는 것과, 매매할 때에 여러 말 하는 것과,</p> <p><이하 중략></p>	<p>[62] 제1은 남을 해롭게 하지 말며 흔히 하기 쉬운 각양 악한 것을 피할 것이다.</p> <p>그 예를 들면</p> <p>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는 것과,</p> <p>늘 하는 사업이나 매매하는 일로 주일을 범하는 것과,</p> <p>필요한 일(신병 같은 것) 밖에 술을 마시는 것이나 취하는 것과,</p> <p>노예를 갖고 있거나 인신매매하는 일,</p> <p>싸움과 시비와 떠들음과 형제간에 송사하는 것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나, 욕을 욕으로 대하는 것과, 매매할 때에 여러 말 하는 것과,</p> <p><이하 중략></p>	<p>번역과정 중 탈자 삽입</p>

현행	개정안	비고
<p>값을 수 없을 듯한 돈을 꾸는 것과 혹 값을 수 없을 듯한 물건을 외상으로 사는 것들이다.</p>	<p>값을 수 없을 듯한 돈을 꾸는 것과 혹 값을 수 없을 듯한 물건을 외상으로 사는 것들이다. <개정></p>	

현 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2편 헌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전 문</p> <p>[65] <u>개신교의 공통적인 신학적 전통과</u> 18세기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에 기초하여 설립된 영국감리교회가 미국에 선교하여 미국감리교 연회를 1784년에 조직하였다. 이 미국감리교회가 맥클레이(R. S. Maclay)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 1884년 6월 24일 고종황제로부터 학교와 병원사업을 운허 받고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H. G. Apenzeller) 목사와 6월 3일 스크랜턴(W. B. Scranton) 의사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어서 1895년 10월 18일 미남감리교회 선교사로 리드(C. F. Reid) 박사를 파송하여 입국함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시작되었다. 1930년에 미국감리회 선교부와 미남감리회 선교부가 한국에서 하나가 되어 기독교조선감리회를 조직하고 그 동안 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그리고 입법과 행정의 표준이 되어 온 바를 12월 2일에 열린 제1차 총회에서 「교리와 장정」으로 제정하였다. 그 후 수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다시 2007년 10월 입법의회에서 개정하게 되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편 헌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전 문</p> <p>[65] <u>개신교 공통의 신학 전통과</u> 18세기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에 기초하여 설립된 영국감리교회가 미국에 선교하여 미국감리교 연회를 1784년에 조직하였다. <u>이 미국감리교회의 가우처(John F. Goucher)목사 등이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고,</u> 맥클레이(R. S. Maclay)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 1884년 6월 24일 입국하여 고종황제로부터 학교와 병원사업을 운허 받았다. <u>그 후 미국감리교회는 1884년말 의사요 목사였던 스크랜턴과 그의 모친인 스크랜턴 대부인 그리고 아펜젤러목사를 조선 선교사로 파송장을 수여하였다.</u>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H. G. Apenzeller) 목사와 <u>5월 3일</u> 스크랜턴(W. B. Scranton) 의사를 입국시켜 조선선교의 문을 열었다. 이어서 1895년 10월 18일 미남감리교회 선교사로 리드(C. F. Reid) 박사를 파송하여 입국함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시작되었다. 1930년에 미국감리회 선교부와 미남감리회 선교부가 한국에서 하나가 되어 기독교조선감리회를 조직하고 그 동안 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그리고 입법과 행정의 표준이 되어 온 바를 12월 2일에 열린 제1차 총회에서 「교리와 장정」으로 제정하였다. 그 후 수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다시 <u>2015년</u> 10월 입법의회에서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p>	<p>문장을 정리함</p> <p>스크랜턴 입국일이 역사적 고증을 거쳐 6월 3일에서 5월 3일임이 확인됨</p> <p>2015년 개정연도 삽입</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66] 제1조(목적) 이 헌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입법과 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제정하여 역사적인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u>유지함으로</u> 교회를 부흥성장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66] 제1조(목적) 이 헌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입법, <u>사법</u>, 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제정하여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u>유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함을</u> 목적으로 한다. <개정></p>	

현 행	개정안	비고
【69】 제4조(사회신경) 감리회가 제정한 사회신경은 <u>감리교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생활의 표준이다.</u>	【69】 제4조(사회신경) 감리회가 제정한 사회신경은 <u>감리회 교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생활의 신앙적 규범이다.</u> <개정>	
【72】 제7조(교구) 감리회는 대한민국에 그 교구를 설치한다. 다만, 대한민국 영토 밖에 설치된 연회 또는 지방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한다.	【72】 제7조(교구) 감리회는 <u>대한민국을 교구로 하되, 대한민국 영토와 영토 밖에 연회와 지방회를 설치할 수 있다.</u> <개정>	
【73】 제8조(외국 감리회와의 협약) <u>우리</u> 감리회는 외국 감리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체결된 협약은 <u>법적인</u> 효력을 가진다.	【73】 제8조(외국 감리회와의 협약) 감리회는 외국 감리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체결된 협약은 <u>감리회 장정과 동일한</u> 효력을 가진다. <개정>	
제2장 회 원	제2장 회 원 제1절 교인 【00】 제0조(교인의 정의) <u>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감리회 교인이 되기를 결심하여,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u> <신설>	
【74】 제9조(교인의 반열) <u>교인</u> 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74】 제9조(교인의 구분) <u>감리회의 교인</u> 은 신급에 따라 원입인,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세례아동을 세례인에 포함
【75】 제10조(회원의 구별) 감리회의 회원은 <u>평신도,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 의무, 권리 등은 법으로 정한다.</u>	【75】 제10조(<u>교인의 직분</u>) <u>감리회의 교인</u> 은 직분에 따라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로 구분한다. <개정>	
	제2절 평신도 임원 【00】 제00조(평신도 임원의 정의) <u>평신도 임원은 개체교회에서 선교, 교육, 봉사, 교제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이다.</u> <신설>	
【76】 제11조(개체교회 평신도 임원) <u>개체교회</u> 평신도 임원은 집사, 권사, 장로로 구분한다.	【76】 제11조(<u>평신도 임원의 구분</u>) 평신도 임원은 <u>집사, 권사, 장로로</u> 구분한다. <개정>	

현 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사역자</p> <p>【00】 제00조(사역자의 정의) <u>사역자는 개체교회에서 교인을 심방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훈련되고 선택된 사람이다.</u> <신설></p>	
<p>【77】 제12조(개체교회 사역자) <u>개체교회</u> 사역자는 심방전도사와 교육사로 구분한다.</p>	<p>【77】 제12조(사역자의 구분) 사역자는 심방전도사와 교육사로 구분한다.<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교역자</p> <p>【00】 제00조(교역자의 정의) <u>교역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감리회로부터 특별히 세움 받은 사람이다.</u> <신설></p>	
<p>【78】 제13조(교역자) 교역자는 <u>연회</u>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한다.</p>	<p>【00】 제00조(교역자의 구분) 교역자는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수련목회자로 구분한다. <u>다만, 목사안수를 받지 않은 교역자는 전도사로 부른다.</u> <개정></p>	<p>“연회”가 삭제됨 “서리담임자와 전도사” 대신에 수련목회자 삽입</p>
	<p>【00】 제00조(회원의 자격 등) <u>회원의 자격, 의무, 권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u> <신설></p>	<p>현행 제10조를 분리하여 정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0장 교 회<신설></p> <p>【00】 제00조(교회의 정의) <u>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은 이들이 모인 공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성례를 행하며, 세상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을 지닌 신앙공동체이다.</u> <신설></p>	
	<p>【00】 제00조(교회의 직무) <u>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u> <신설></p> <p>① <u>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행한다.</u> <신설> ② <u>교인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한다.</u><신설> ③ <u>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u><신설></p>	

현 행	개정안	비고
	④ <u>교회와 사회에서 섬기고 봉사한다.</u> <신설> ⑤ <u>절제와 금욕, 선행 등 개인과 사회를 성화시키는 삶을 훈련한다.</u> <신설>	
	【00】 제00조(교회의 설립 등) <u>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u> <신설>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의 회</p> 【79】 제14조(의회의 종류) <u>감리회의 의회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다섯 가지 의회로 조직하되 이 모든 의회의 직무와 권한은 법으로 정한다.</u>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의 회</p> 【79】 제14조(의회의 종류) <u>감리회는 의회로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입법의회, 총회를 둔다.</u> <개정>	입법의회를 별도의 의회로 구분함
【80】 제15조(입법권) <u>감리회의 입법권은 다음과 같다.</u> ① <u>감리회의 입법은 총회 안에 설치된 입법의회에서 전담한다.</u> ② <u>본부운영에 대한 내규는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제정한다.</u>	【80】 제15조(입법권) <u>감리회의 헌법과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권한은 입법의회에 있다.</u> <개정> ① <삭제> ② <삭제>	
【81】 제16조(각 의회의 조직 및 소집절차) <u>감리회의 의회별 조직, 직무, 소집절차 등은 법으로 정한다.</u>	【81】 제16조(각 의회의 구성, 직무 및 소집절차) <u>감리회 각 의회의 조직, 직무, 소집절차 등은 법률로 정한다.</u>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감독회장과 감독</p> 【82】 제17조(<u>감독회장</u>) <u>감리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회장을 둔다.</u> ① <u>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u> ② <u>감독회장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u> ③ <u>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u>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감독과 연회장</p> 【82】 제17조(<u>감독</u>) ① <u>감독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수반이다.</u> <개정> ② <u>감독의 임기는 2년 전임으로 한다.</u> <개정> ③ <u>감독은 퇴임 후에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u> <신설> ④ <u>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u> <개정>	
【83】 제18조(<u>감독</u>) <u>각 연회별로 다음과 같이 감독을 둔다.</u> ① <u>감독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u>	【83】 제18조(<u>연회장</u>) <개정> ① <u>연회장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u>	

현 행	개정안	비고
<p>에 따라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p> <p>②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u>법률로</u> 정한다.</p> <p>③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겸임제로 하며</u> 연임할 수 없다.</p>	<p><u>에 따라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u> <개정></p> <p>② <u>연회장의</u> 임기는 2년 <u>겸임으로</u> 하고 연임할 수 없다. <개정></p> <p>③ <u>연회장의</u>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u>법률로</u> 정한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감리회 본부</p> <p>【84】 제19조(감리회 본부) 감리회의 총괄적 행정을 위해 감리회 본부를 두고 감독회장이 그 수반이 된다. 감리회 본부의 기구, 조직, 직무, 인사 등은 <u>법으로</u>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감리회 본부</p> <p>【84】 제19조(감리회 본부) 감리회의 총괄적 행정을 위해 감리회 본부를 두고 <u>감독이</u> 그 수반이 된다. 감리회 본부의 기구, 조직, 직무, 인사 등은 <u>법률로</u> 정한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재 판</p> <p>【85】 제20조(심사·재판위원회)</p> <p>① 감리회에 소속한 회원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가 기소한 징계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위원회를 둔다.</p> <p>② <u>감리회 각 의회의 위법한 결의나 각 의회 의장의 위법·부당한 결정이나 행정처리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현저하게 문란하게 된 경우에 피해자나 의회구성원이 의회의 결의의 취소, 무효확인이나 의회의 장의 결정 및 행정처리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을 구하여 제소한 행정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행정재판위원회를 둔다.</u></p> <p>③ <u>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의 종류, 조직과 직무 등은 법률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u>심사 및 재판</u> <개정></p> <p>【85】 제20조(심사·재판위원회)</p> <p>① 감리회의 신앙생활과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연회와 총회에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두고 총회에 최고재판위원회를 둔다.<신설></p> <p>② <u>감리회 회원 및 임원·직원의 질서위반과 장정위반 등에 대한 징계사건은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기소하면 재판위원회가 재판한다.</u> <개정></p> <p>③ <u>감리회 각급 의회의 의결이 위법하거나 각급 행정기관, 산하기관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할 때에는 그 취소, 무효확인, 의무이행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u> <개정></p> <p>④ <u>감리회의 장정이나 의결·행정처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u> <신설></p> <p>⑤ <u>심사위원회·재판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위원의 자격과 임기, 관할과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u> <개정></p>	<p>② 현행의 2항을 개정안의 2, 3항으로 분리함. 회원과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 재판을 명시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함</p> <p>③ 재판위원회에서 행정재판도 담당하게 함</p> <p>④ 장정해석업무를 모두 재판위원회가 관할하게 하여 분쟁의 예방 및 해결 기능을 통합함</p>

현 행	개정안	비고
	<p>【00】 제00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재산관리</p> <p>【86】 제21조(재단소속)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감리회 소속법인 및 재산관리 <개정></p> <p>【86】 제21조(소속 법인) 다음 각 항의 법인은 감리회에 속한다.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개정> ②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역자은급재단 <개정> ③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장학재단 <개정> ④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개정> 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태화복지재단 <개정> ⑥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신설> ⑦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신설> ⑧ 학교법인 삼일학원 <신설> 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애향숙 <신설> ⑩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신설> ⑪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신설> 	
<p>【87】 제22조(재산관리) 감리회 본부와 개체교회 및 감리회 산하 단체, 기관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해당 법인의 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한다.</p>	<p>【87】 제22조(재산관리)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기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항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기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 증여한 후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 한다. <신설> ② 제21조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당해 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동산은 당해 법인 명의로 관리하되, 부동산의 매매, 임대, 담보제공 등의 행위는 당해 법인의 정관에 따라 한다. <신설> 	

현 행	개정안	비고
	<p>③ <u>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등의 행위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신설></p> <p>④ <u>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 또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신설></p> <p>⑤ <u>제4항에 따라 감리회가 설립할 법인은 정관 제1조에 설립자가 기독교대한감리회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관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은 감리회가 선임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u> <신설></p>	
<p>【88】 제23조(재산처분 및 기채)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처분하거나 기채 등 의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88】 제23조(재산관리에 관한 법률) <u>감리회 소유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u> <개정></p>	
<p>【89】 제24조(이사과송) <u>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법인 및 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인 및 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이사는 감리회에서 과송을 받아야 한다. 개체교회의 재산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의 이사도 감리회의 과송을 받아야 한다.</u></p>	<p>【89】 제24조(이사과송)<삭제></p>	<p>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선거관리</p> <p>【90】 제25조(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p> <p>① <u>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u></p> <p>② <u>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선거관리</p> <p>【90】 제25조(<u>감독 및 연회장</u> 선거관리위원회)(개정)</p> <p>① <u>감독 및 연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감독 및 연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u><개정></p> <p>② <u>감독 및 연회장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u> <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헌법 및 법률 개정</p> <p>[91] 제26조(발의권) 헌법 및 법률의 발의권은 다음과 같다.</p> <p>①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p> <p>② 4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p> <p>③ 입법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p> <p>④ 감독 및 감독회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 및 법률 개정은 그 헌법 및 법률 제안 당시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개정></p> <p>[91] 제26조 (발의권)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개정></p> <p>① 장정개정위원장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p> <p>② 3분의 1 이상의 연회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p> <p>③ 헌법은 입법위원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법률은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정 및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p> <p>④ <삭제></p>	<p>현행 ④항은 제28조로 이동</p>
	<p>[00] 제00조 (입법절차)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신설></p>	
<p>[92] 제27조(헌법 및 법률 개정안의 공고)</p> <p>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30일 전까지 감독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법률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p>	<p>[92] 제27조(개정안의 공고)</p> <p>① 발의된 헌법개정안은 입법의회 의장이 입법의회 개최 30일 전까지 <u>감리회 본부 홈페이지에</u>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p> <p>②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입법위원회 의장이 입법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p>	
<p>[93] 제28조(의결 및 공포)</p> <p>① 입법위원회는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p>	<p>[93] 제28조(의결 및 공포)</p> <p>① 좌동</p>	

현 행	개정안	비고
<p>내에 의결하여야 한다.</p> <p>②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p> <p>③ 법률개정안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p> <p>④ <u>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입법의회에서 확정되면 감독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u></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u>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입법의회에서 확정되면 감독은 이를 20일 이내에 공포한다. 다만 감독이 그 기간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입법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개정></u></p> <p>⑤ <u>연회장 및 감독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 및 법률 개정은 그 헌법 및 법률 제안 당시의 연회장 및 감독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개정></u></p>	
<p>제 10 장 보 칙</p> <p>【94】 제29조(정관 및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p> <p>①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기독교타임즈」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입법의회에서 한다.</p> <p>②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입법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제 10 장 보 칙</p> <p>【94】 제29조(정관 및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p> <p>①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기독교타임즈」, <u>도서출판 KMC</u>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입법의회에서 한다. <개정></p> <p>② 좌동</p>	<p>추가 / 도서출판 KMC</p>
	<p>부 칙 (2015. 10. 30)</p> <p>【102】 제1조(시행일) <u>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3편 조직과 행정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교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개체교회</p> <p>[000]제0조(개체교회의 설립) <u>개체교회의 설립은 다음의 같다.</u>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개체교회는 담임할 교역자가 있고, 등록된 입교인이 12명 이상이며, 공동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정된 예배처소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다.</u> ② <u>개체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감리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③ <u>감리사는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회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 ④ <u>감리사가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하고도 30일 이내에 지방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연회장에게 설립을 청원할 수 있으며 연회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회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 ⑤ <u>지방회실행부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체교회 설립을 의결한 경우 감리사는 이를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회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u> 	<p>개체교회의 존치 및 관리에 대한 정확한 의미설명</p>
	<p>[000]제0조(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 <u>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은 다음과 같다.<신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개체교회가 분립 또는 통합하고자 할 경우, 당해 개체교회의 당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산권은 구역회에서 처리한다.</u> ② <u>개체교회가 제1항에 따라 분립 또는 통합을 의결한 경우, 분</u> 	

현행	개정안	비고
	<p><u>립 또는 통합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감리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u>감리사는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회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립 또는 통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④ <u>감리사가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하고도 30일 이내에 지방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연회장에게 청원할 수 있으며, 연회장은 청원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회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립 또는 통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⑤ <u>지방회실행부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체교회의 분립 또는 통합을 의결한 경우 감리사는 이를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회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u></p>	
	<p>[000]제0조(개체교회의 폐쇄)</p> <p>① <u>개체교회의 폐쇄는 구역회의 결의에 따라 담임자가 지방 감리사에게 보고하면 당해 개체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감리사가 지방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신설></u></p> <p>② <u>지방회실행부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개체교회 폐쇄를 의결하면 지방감리사는 연회에 보고한다.<신설></u></p>	
<p>제2절 교인</p> <p>【104】 제3조(교인) 감리회의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하며 그들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원입인</p> <p>원입인은 <u>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회개한 후</u>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u>이로</u> 한다.(세례아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 포함)</p>	<p>제2절 교인</p> <p>【104】 제3조(교인) <u>감리회는 신급에 따라 교인을</u> 원입인, <u>세례인</u>, 입교인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p> <p>① 원입인은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의 예배에 출석하는 <u>교인</u>을 말한다. <개정></p>	<p>세례아동과 세례인을 명칭 통합</p> <p>3항과 통합하여 2항으로 변경</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세례아동 세례아동은 유아세례 또는 아동세례를 받은 12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유아세례는 5세까지 받을 수 있고 아동세례는 6세부터 12세까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답을 필한 후 받을 수 있다. 단, 유아세례 및 아동세례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와 입회하에 거행한다.</p> <p>③ 세례인 <u>세례인은 세례아동으로 13세 이상 된 이와 원입인이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로 한다.</u></p> <p>④ 입교인 <u>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목사가 예문대로 입교시킨 이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 된 원입인에게는 세례와 입교식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명 하여 온 이도 이와 같다.</u></p>	<p>② <삭제></p> <p>③ 세례인 <u>세례인은 세례아동으로 13세 이상 된 이와 원입인이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로 한다.</u></p> <p>④ 입교인 <u>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목사가 예문대로 입교시킨 이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 된 원입인에게는 세례와 입교식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명 하여 온 이도 이와 같다.</u></p>	
<p>【108】 제7조(교인의 권리) 교인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p> <p>① <u>세례 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례한다.</u></p> <p>② <u>입교인은 당회원이 되며 개체교회와 감리회 모든 조직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u></p> <p>③ <u>교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u></p>	<p>【108】 제7조(교인의 권리) <u>교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u> <개정></p> <p>① <u>교인은 성찬식에 참례한다.</u> <개정></p> <p>② <u>입교인은 당회원으로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u> <개정></p> <p>③ <u>교인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u> <개정></p>	<p>① “세례받은” 교인 ->회개하고 믿음을 구하는 교인은 누구나 성찬식에 참석(웨슬리의 개방형 성찬, 1740.6.28.일지)</p> <p>② 발언,의결권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집사</p> <p>【109】 제8조(집사의 자격) <u>집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u></p> <p>① <u>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 자</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집사</p> <p>【109】 제8조(집사의 자격) <u>개체교회는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집사를 두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u> <개정></p> <p>① <좌동></p>	

현행	개정안	비고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③ 감리회에서 제정한 집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② <좌동> ③ <좌동>	
	제 4 절 권사 【000】 제11조 (권사) 개체교회는 교인들의 <u>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권면할 권사를 둔다.</u> <신설>	
	제 5 절 장로 【000】 제0조(장로) 개체교회는 <u>교인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교회의 질서유지와 교역자의 목회를 협력하도록 장로를 두며 장로는 입교인 3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다만, 입교인 수가 30명에 미달하는 교회도 1명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u> <신설>	
【116】 제15조(장로의 정수)	<u><삭제></u>	신설조항에 삽입
【117】 제16조(장로의 자격) <u>장로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u> ①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67세 미만 된 이로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고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이 ② 기획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신천장로로 결의된 이 ③ 신천장로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지방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 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	【117】 제16조(장로의 자격) <u>장로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u> <개정> ① <u>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한 사람</u> <개정> ② <u>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사람</u> <개정> ③ <u>모든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u> <개정> ④ <u>연령이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u> <신설>	④ 67세에서 65세로 개정
【123】 제22조(장로의 은퇴) 장로는 <u>70세(2월 말 기준)가 된 후 처음 개최되는 지방회에서</u> 은퇴한다. 다만, 65세 이상이 된	【123】 제22조(장로의 은퇴) <u>2월 말일을 기준으로 70세가 된 장로는 당해연도 지방회에서 은퇴한다.</u> 다만 65세 이상 된 장로	은퇴 시기를 명확히 함

현행	개정안	비고
<p>장로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p>	<p>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개정></p>	
<p>【124】 제23조(은퇴장로의 예우) 장로로 은퇴한 이는 원로장로라고 호칭하며 <u>입원회, 구역회, 지방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u></p>	<p>【124】 제23조(은퇴장로의 예우) <u>장로로 은퇴한 사람은 원로장로라고 호칭하며 지방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u> <개정></p>	<p>해당 의회만 명기</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절 개체교회 사역자</p> <p>【125】 제24조(심방전도사의 자격) 심방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으며 다음 제2항, 제3항, 제4항의 자격을 보유한 23세 이상 된 이</p> <p>② 신학대학을 졸업한 이로서 심방전도사가 되고자 하는 이</p> <p>③ 감리회가 인준한 신학원 3년간의 과정을 수료한 이</p> <p>④ 장애인 중 감리회 본부의 위탁교육을 받고 자격을 얻은 이</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절 개체교회 사역자</p> <p>【125】 제24조(심방전도사의 자격) 심방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좌동></p> <p>② <u>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인준한 국내의 대학교에서 신학 또는 기독교교육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u> <개정></p> <p>③ 감리회가 인준한 <u>신학원에서 신학교육</u> 과정을 졸업한 사람. <개정></p> <p>④ <좌동></p>	<p>② 심방전도사 인준대학 확대</p>
<p>【128】 제27조(교육사의 자격) <u>교육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u></p> <p>① <u>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 교육에 대한 소명감이 투철한 이</u></p> <p>②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의 기독교교육과를 졸업한 이</p>	<p>제27조(교육사의 자격) <u>교육사는 감리회에 입교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u><개정></p> <p>① <삭제></p> <p>① <u>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u> <개정></p> <p>② <u>총회실행부위원회가 인준한 국내의 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u> <신설></p>	<p>① 조항에 통합</p> <p>① ‘감신, 목원, 협성대학’ 명기</p> <p>② 교육사 인준대학 확대</p>
<p>【130】 제29조(교육사의 직무) 교육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130】 제29조(교육사의 직무) 교육사는 <u>담임목사의 지도아래 개체교회 교인의 교육과 신앙지도를 담당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u> <신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① 담임자가 명하는 바에 따라 기독교교육 분야를 담당한다.</p> <p>② 당회, 임원회, 구역회의 회원이 된다.</p> <p>③ 담임목사와 당회 및 구역회에 자기의 직무수행 결과를 보고한다.</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제 7 절 <u>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u></p> <p>【131】 제30조(기관 파송 전도사)</p> <p>① 기관 파송 전도사(군목, 선교사, 그 밖의 파송)는 감리사가 파송한 기관에서 맡은 일에 사역한다.</p> <p>② 준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이로, 선교사 인준을 받은 이와 군목자격 취득한 이</p> <p>③ 수련목회자로 전문기관에 파송 받은 이</p> <p>④ 군목으로 입대할 기관 파송 전도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목원대학교 신학과, 협성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이로 하며,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에는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웨슬리 영성수련, 교회성장학, 전도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p>	<p>제 6 절 <u>수련목회자와 서리담임자 <개정></u></p> <p>【131】 <삭제></p>	<p>수련목회자로 통합 30조-> 32조 신설이하로 이동</p>
<p>【132】 제31조(수련목회자의 자격) <u>수련목회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u></p> <p>① <u>입교인이 된 후 7년 이상 경과되고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이</u></p> <p>② <u>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u></p>	<p>【132】 제24조(수련목회자와 서리담임자의 자격) <u>수련목회자는 감리회가 실시하는 수련목회자 고시에 합격한 교역자 후보생을 말하며, 서리담임자는 파송후 수련목회자 고시를 합격해야 준 회원에 허입될 수 있으며, 전도사로 호칭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u></p> <p>① <u>입교인이 된 후 7년 이상 경과되고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사람 <개정></u></p> <p>② <u>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신학석사학위 (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u></p>	<p>※ 수련목회자나 서리담임자 모두 수련목회자 고시에 합격해야한다.</p> <p>인준 대학교 허용</p>

현행	개정안	비고
<p><u>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u></p> <p>③ <u>연세대학교 신학대학(신학과)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웨슬리 영성수련, 교회성장학, 전도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이</u></p> <p>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수련목회자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회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를 받지 못한 이 2.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채무가 있거나 채무보증을 한 이 3.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 	<p>③ <u>연세대학교와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인준한 국내의 대학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후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감리회가 정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 신학사 학위가 없는 사람은 ②항의 신학대학교나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필수과목(3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u></p> <p><개정></p> <p>④ <u>장애인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감리회가 위탁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u></p> <p><신설></p> <p>⑤ <u>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감리회가 인정하는 해외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u> <신설></p> <p>⑥ <u>다음에</u>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목회자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동> 2. <좌동> 3. 음주, 흡연, 마약, 도박, <u>동성연애(결혼)</u>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 <개정> <p>⑦ <u>감리교회 교역자 필수 교육과목은 감리교회(웨슬리)신학, 한국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영성수련으로 한다.</u> <개정></p>	<p>※ 167단 제66조(연회준회원의 자격)에서 이동</p> <p>※ 교회성장학, 전도학은 일반 과목으로 삭제</p> <p>④항→⑥항</p> <p>⑦항-③항에서 분리</p>
<p>[133] 제32조(수련목회자의 파송)</p> <p>① 수련목회자를 교회에 파송할 시 입교인 100명에 1명을 파송할 수 있다. 파송기관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종전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합격자 중 신학대학원 미필자는 신학대학원을 이수한 후 파송한다.</p> <p>② 수련목회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리사가 임면한다. 개체교회나 전문기관에 1년 동안 서리로 사역하고</p>	<p>[133] 제32조(수련목회자의 파송)</p> <p>① 수련목회자를 교회에 파송할 시 입교인 100명에 1명을 파송할 수 있다. 파송기관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p> <p>② 수련목회자는 소속 교회 구역회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감리사가 파송한다. <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u>연회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 이는 연회 감독의 파송을 받아 2년간의 준회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준회원은 ‘전도사’로 호칭한다.</u></p> <p>③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수련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다.</p>	<p>③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나 기관, 법인, 단체에서는 수련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다. <개정></p> <p>④ 개체교회 서리담임자로 파송받을 이는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1년간 사역하며, 수련목회자 고시를 합격해야 준회원 과정에 허입할 수 있다.<신설></p>	
	<p>【000】 제00조(수련목회자 파송교회 및 기관) 수련목회자를 파송할 수 있는 개체교회, 기관, 단체는 다음과 같다. <신설></p> <p>① 수련목회자를 담임자로 초빙하고자 하는 개체교회 <개정></p> <p>② 담임목사가 정회원으로 허입한지 5년 이상 경과하고 감리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개체교회 중 수련목회자 파송교회로 지정된 교회 <개정></p> <p>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리회가 회원으로 가입되거나, 대표를 파송하는 교회연합기관 2. 감리회에서 이사를 파송하고 있는 감리회 계통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3. 감리회 소속 교회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가 설립,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4.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가 수련목회자 파송기관으로 지정한 비영리법인 5. 국방부 군종사관후보생, 선교지역대표선교사회에서 지정한 선교지 	<p>5. 군종사관후보생, 수련선교사</p>

현행	개정안	비고
	<p>④ 제2항, 3항에 해당하는 개체교회, 기관, 단체가 수련목회자를 파송받기 위해서는 수련목회자에게 감리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수련목회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신설></p>	
<p>【134】 제33조(수련목회자의 직무) 수련목회자의 직무는 담임자의 지도 아래 일반목회, 교회운영관리, 사무행정 등에 관한 것을 수련한다.</p>	<p>【134】 제33조(수련목회자의 직무) 수련목회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p> <p>① 파송된 교회나 기관에서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p> <p>② 소속 교회 당회의 회원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p> <p>③ 소속 교회의 당회에 직무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p> <p>④ 개체교회를 담임하는 수련목회자는 감리사의 허락을 받아 당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p>	
<p>제 8 절 개체교회 담임자</p> <p>【137】 제36조(담임자의 파송)</p> <p>①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p> <p>②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p> <p>③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p>	<p>제 7 절 개체교회 담임자</p> <p>【137】 제36조(담임자의 파송)</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개체교회의 담임자가 이임 또는 은퇴한 후 180일 이내에 담임자를 청빙하지 못할 경우, 연회장은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2명 이상 중에서 1명을 직권 파송한다. <신설></p>	<p>개체교회에 담임자 청빙 권한 이양</p>
<p>【138】 제37조(담임자의 자격 구분) 개체교회 담임자의 자격은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로 구분한다.</p>	<p>【138】 제37조(담임자의 자격 구분) 개체교회 담임자의 자격은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수련목회자, 서리담임자로 구분한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139】 제38조(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영적 지도자 : 담임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회의 모든 예배 절차를 주관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식, 입교식, 성찬식, 혼례식, 장례식 등을 집행한다. 다만, 목사로 안수 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행하지 못한다. 2. 속회를 지도하여 부흥 발전케 한다. 3. 모든 교인의 가정을 심방하여 신앙을 지도하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4. 교회의 선교사업, 기독교교육사업, 사회사업, 문화사업 등의 진흥을 권장하고 지도한다. 5. 능력 있는 교회 청년들을 발굴하여 지도 육성하며 기독교 사업에 헌신 봉사케 한다. <p>② 행정 책임자 : 담임자는 교회의 행정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회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며 회의시 장정 또는 규칙을 해석하거나 감리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담임자는 사안에 따라 기획위원회, 당회, 구역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 2.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을 지도한다. 3. 원입인과 세례인들에게 「교리와 장정」을 가르친다. 4. 교회에 속한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명 하여 가는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교부한다. 	<p><개정></p> <p>【139】 제38조(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담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p> <p>① <좌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u>감리회 신앙 전통과 교리를 전수하기 위하여 감리회 본부에서 발행한 교재를 사용한다.</u> <신설> <p>② <좌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p>6. 감리교회 출판 교재사용강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5. 교회에 소속한 모든 교인의 주소, 성명, 세례, 임원피택, 혼례식, 장례식 등에 관해 기록한 교적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p> <p>6.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교회의 신령상 정황을 비롯하여 교인수와 사업 개요 등을 기록한 교회 현황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한다.</p> <p>7. 지방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감리사를 도우며 교회 상황을 감리사에게 보고하고 협력을 받는다.</p> <p>8. 이웃 교회와 다른 교파 소속 교회와 친선을 도모하고 기독교 연합 사업기관에 협력한다.</p> <p>9. 총회, 연회, 지방회에서 배당한 교회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한다. 1년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담임자에 대하여는 감독이 직임을 정지시킨다.</p> <p>③ 교회 회의의 주재자 : 개체교회 담임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 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p>	<p>6. <좌동></p> <p>7. <좌동></p> <p>8. <좌동></p> <p>9. <좌동></p> <p>10. 담임자 이임시 개체교회의 사무와 행정 재정 등 교회 현황을 포함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신설></p> <p>③ <좌동></p>	<p>10. 문서행정 인수인계 강화</p>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절 부담임자</p> <p>【140】 제39조(부담임자의 파송) 부담임자는 개체교회 담임자의 추천으로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파송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절 부담임자</p> <p>【140】 제39조(부담임자의 파송 및 인사처리)</p> <p>① <u>부담임자는 개체교회 담임자의 추천으로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회장이 파송한다. <개정></u></p> <p>② <u>제1항에 의한 부담임자 청빙을 위한 구역인사위원회는 감리사의 위임을 받아 담임자가 소집할 수 있다. <개정></u></p> <p>③ <u>부담임자는 담임자의 제청을 받아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회장이 파송한다. <개정></u></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 10 절 개체교회의 부서와 조직</p> <p>【144】 제43조(부서의 구성) 개체교회는 각 분야별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그 직무를 분담케 한다.</p> <p>① 선교부 ② 교육부 ③ 사회봉사부 ④ 문화부 ⑤ 재무부 ⑥ 관리부</p>	<p>제10절 개체교회 부서와 조직</p> <p>【144】 제43조(부서의 종류) 개체교회는 각 분야별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그 직무를 분담케 한다.</p> <p>① <좌동> ② ②<좌동> ③ ③<좌동> ④ 예배부 <신설> ⑤ ④항과 <좌동> ⑥ ⑤항과 <좌동> ⑦ ⑥항과 <좌동></p>	<p>④ ‘예배부’ 신설 ④→⑤항 조정 ⑤→⑥항 조정 ⑥→⑦항 조정</p>
<p>【149】 제48조(속장의 선출) <u>속장은 제47조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이 중에서 당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속장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u></p>	<p>【149】 제48조(속장의 선출) 속장은 임원 중에서 기획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당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p>	
<p>【159】 제58조(재무부의 직무) 재무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u>교회의 연간 수입지출 예산안과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한다.</u></p> <p>② 확정된 예산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교인들에게 의무금을 부담케 하고 현금할 것을 청한다.</p> <p>③ 교회의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재정을 관리한다.</p> <p>④ 전임 교역자와 유급 직원들에게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p>	<p>【159】 제58조(재무부의 직무) 재무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p> <p>①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현금 집계, 예산집행, 회계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되, 회계와 관련된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p> <p>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⑤ 교역자의 주택을 마련한다.</p> <p>⑥ 교역자의 퇴직금을 수합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관리한다.</p> <p>⑦ 감리회 본부, 연회, 지방회의 해당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한다.</p> <p>⑧ 교회에 소속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을 납기 내에 납부한다.</p> <p>⑨ 임원회에 수입지출에 관한 재정 현황을 보고하고, 당회와 구역회에 연간 결산을 보고한다.</p>	<p>⑤ <좌동></p> <p>⑥ <좌동></p> <p>⑦ <좌동></p> <p>⑧ <좌동></p> <p>⑨ <좌동></p>	
	<p>【161】 제60조(예배부의 조직) 예배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신설></p> <p>① <u>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예배부를 조직한다.</u></p> <p>② <u>예배부는 부장 1명과 총무 또는 서기 1명을 선출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u>을 선출한다.</p>	
	<p>【162】 제61조(예배부의 직무) 예배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p> <p>① <u>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모든 예배와 성례가 은혜롭고 원만하게 진행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돕는다.</u></p> <p>② <u>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예배 안내 및 헌금과 강단위원을 조직하여 훈련하고 세운다.</u></p> <p>③ <u>모든 예배의 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하여 보관한다.</u></p>	
<p>【167】 제66조(연회 준회원의 자격) 연회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167】 제66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연회 준회원은 연회 과정고시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연회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준회원으로 허입한 교역자를 말하며 전도사로 칭한다. <신설></p>	<p>[132] 제31조(수련목회자의 자격) 으로 이동</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① <u>감리회에서 설립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및 감리회가 인정하는 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다만, 미주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받은 이는 미주지역에 국한하여 목회를 할 수 있다.</u></p>	<p>① <삭제></p>	
<p>② <u>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웨슬리 영성 수련, 교회성장학, 전도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u></p>	<p>② <삭제></p>	
<p>③ <u>감리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웨슬리 영성 수련, 교회성장학, 전도학을 포함한 2년간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u></p>	<p>③ <삭제></p>	
<p>④ <u>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연합감리회 소속 13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미주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영성 수련, 교회성장학, 전도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u></p>	<p>④ <삭제></p>	
<p>⑤ <u>감리회가 인정하는 대학원은 신학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승인한 대학원(M.Div.) 또는 신학대학원(M.Div. 또는 Th.M.)을 말한다.</u></p>	<p>⑤ <삭제></p>	
<p>⑥ <u>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감리회가 인정하는 해외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u></p>	<p>⑥ <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p>⑦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이는 개체교회 서리담임자로 파송을 받아 준회원 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p> <p>⑧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이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한 후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 받아 준회원 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p> <p>⑨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이는 지방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개체교회를 담임하거나 기관 또는 개체교회에서 수련목회자로 1년 동안 사역하고,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 후, 2년간의 준회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준회원은 '전도사'로 호칭한다.</p>	<p>⑦ <삭제></p> <p>⑧ <삭제></p> <p>⑨ <삭제></p>	
<p>【169】 제68조(연회 준회원의 보수(생활비)) 연회 준회원의 보수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연회 준회원의 <u>보수(생활비)</u>는 해당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p> <p>② 구역 서리담임자의 보수(생활비)는 그 구역(개체교회)에서, 수련목회자의 <u>보수(생활비)</u>는 해당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 <u>구역 서리담임자와 수련목회자</u>는 자기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p>	<p>【169】 제68조(연회 준회원의 생활비) 연회 준회원의 생활비는 <u>다음과 같다.</u> <개정></p> <p>① 연회 준회원의 <u>생활비</u>는 해당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p> <p>② <u>수련목회자와 서리담임자의 생활비</u>는 해당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 수련목회자는 자기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p>	<p>① '보수' 삭제</p>
<p>【170】 제69조(목사안수) 목사로 안수 받을 이는 준회원 2년 과정을 마치고 연회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중사관후보생, 국외선교사로 파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p>	<p>【170】 제69조(목사안수) 목사로 안수 받을 <u>사람은</u> 준회원 2년 과정을 마치고 연회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중사관후보생, 국외선교사로 파송할 <u>사람은</u>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p>	<p>이→사람으로</p>
<p>【171】 제70조(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171】 제70조(연회 정회원 정의와 자격) 연회 <u>정회원은 수련목회자고시를 합격하고, 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은</u></p>	

현행	개정안	비고
<p>① 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은 이</p> <p>② 감독이 파송한 개체교회나 기관에서 목회를 하고 입법의회에서 제정한 과정고시에 합격한 이</p> <p>③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이</p> <p>④ 직무수행에 방해될 정도의 채무가 없고 타인의 채무보증을 한 사실이 없는 이</p> <p>⑤ 정회원으로 퇴직하였던 이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재허입할 수 있다.</p> <p>1. 지방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1년 이상 서리로 시무한다.</p> <p>2. 지방회의 천거로 본인이 퇴회한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p> <p>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정회원이 될 수 없다.</p> <p>1. 연회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를 받지 못한 이</p> <p>2.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채무가 있거나 채무보증을 한 이</p> <p>3.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p> <p>⑦ 군목으로 정회원에 허입할 이는 신학대학원(Th.M. 또는 M.div.)을 졸업하여야 한다.</p>	<p><u>후 연회에서 정회원으로 허입한 교역자를 말하며</u>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 <u>다음과</u> 같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정회원으로 퇴직하였던 <u>사람은</u>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재허입할 수 있다. <개정></p> <p>1. <좌동></p> <p>2. <좌동></p> <p>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u>사람은</u> 정회원이 될 수 없다. <개정></p> <p>1. <좌동></p> <p>2. <좌동></p> <p>3. 음주, 흡연, 마약, 도박, <u>동성연애(결혼)</u>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사람 <개정></p> <p>⑦ 군목으로 정회원에 허입할 <u>사람은</u> 신학대학원(Th.M. 또는 M.div.)을 졸업하여야 한다. <개정></p>	<p>이→사람으로</p> <p>이→사람으로</p> <p>이→사람으로</p>

현행	개정안	비고
<p>【174】 제7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u>연회 협동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u></p> <p>① <u>장애인 중에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이</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사 학위를 취득한 시청각 장애인(맹인, 농아인)으로 장애인 목회에 헌신하여 온 이</u> 2. <u>장애인교회를 담임하여 7년 이상 목회를 한 이</u> 3. <u>지방회에서 7년간 품행이 통과된 이</u> <p>② <u>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인준하며 연회 현직 감독이 이사장이나 원장의 직임을 수행하며 연회에서 파송하는 당연직 이사(연회 총무 포함)가 이사 정수의 1/2 이상 되는 신학원을 졸업한 이로 다음에 해당된 이</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4년제 신학원을 졸업하고 본인이 교회를 개척설립하여 교회재산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는 서리전도사로 2년간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u> 2. <u>교회개척 후 입교인이 30명 이상 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입증되었을 때 2년간 감리교회가 지정하는 추가 신학교육 과정을 필한 후 협동회원 목사로 안수 받을 수 있다.</u> <p>③ <u>연회신학원을 졸업하고 타 교파에서 목회하는 이로서 감리교회로 편입할 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감리교회의 협동회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전한 교파에서 목회하며, 목사안수를 받은 이</u> 2. <u>목회하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하고, 입교인수 30명 이상이 확보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이</u> 3. <u>2년간 감리교회가 지정하는 추가 신학교육과정을 필하고 안수 받기를 원하는 이는 협동회원 목사안수를 받으며, 타 교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이는 협동회원으로 영입한다.</u> <p>④ <u>협동회원으로 허입할 이는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u></p>	<p>【174】 제7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연회 <u>협동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개정></u></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을 통과해야 한다.</p> <p>⑤ 협동회원의 추가 신학교육과정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⑥ 협동회원으로 파송 받은 이는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서 목회하며, 타 교회로 파송 받을 수 없다.</p> <p>⑦ 협동회원 연수교육은 정회원 연수교육에 따른다.</p> <p>⑧ 협동회원이 되기 위해 유지재단에 편입한 부동산은 임의로 전환처분할 수 없다.</p>	<p>⑤ <좌동></p> <p>⑥ <삭제></p> <p>⑦ <좌동></p> <p>⑧ <좌동></p>	<p>⑥-> 【000】 제00조(협동회원의 허입과 파송) <신설> 조항으로 이동</p>
	<p>【000】 제00조(협동회원의 허입과 파송) <신설></p> <p>① 협동회원은 연회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허입한다. <신설></p> <p>② 연회장은 제1항에 의하여 허입한 협동회원을 허입 당시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파송하되, 허입 당시 파송된 교회 외에는 파송할 수 없다.</p> <p>③ 협동회원이 파송된 교회는 상호교환 파송할 수 있다. <신설></p>	<p>협동회원 허입 및 파송을 신설 조항으로 상세히 명기</p>
<p>【176】 제75조(연회 협동회원의 목사안수)</p> <p>① 장애인으로서 협동회원이 된 이는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p> <p>② 신학원을 수료하고 협동회원으로 가입한 이는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p>	<p>【176】 제75조(협동회원의 목사안수)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협동회원은 허입과 동시에 목사로 안수한다.<개정></p> <p>① <삭제></p> <p>② <삭제></p>	
<p>【178】 제77조(국외에 있는 교역자) 국외에 있는 교역자의 지위와 의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국외로 장기 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역자는 출국 전에 소속 연회 감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년 이상 체류하는 이는 휴직 처리한다.</p>	<p>【178】 제77조(국외 거주 교역자의 인사처리)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과 같다. <개정></p> <p>① 교역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 전에 소속 연회 연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휴직 처리한다. <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국외에 있는 교역자는 매년 1월에 소속연회 감독과 감리사에게 자기 근황과 활동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u>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는 퇴회 처리한다.</u></p> <p>④ <u>총회 또는 연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연회원으로 인정한다. 그 이외에는 휴직처리하고 휴직 기간은 연급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u></p> <p>⑤ <u>유학중에 있는 교역자는 장기체류를 허가하되 석사과정은 7년, 박사과정은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업을 마치고 1년 이내에 파송을 받지 아니하면 미파 처리한다.</u></p>	<p>② <u>국외에 체류 중인 교역자는 매년 1월에 소속 연회 연회장에 게 장정 표준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개정></p> <p>③ <u>교역자가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할 경우 석사과정은 7년, 박사과정은 10년 이내에 과정을 마쳐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파송을 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미파 처리된다.<개정></u></p> <p>④ <좌동></p> <p>⑤ <삭제></p>	<p>③ 현행조문 삭제후 ⑤->③으로 이동 개정</p> <p>⑤->③으로 이동 개정</p>
<p>【179】 제78조(교역자의 인사처리)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개체교회 담임자, 부담임자, 수련목회자의 인사문제는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p> <p>② 감리회 본부를 비롯한 각 기관의 교역자 인사문제는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p> <p>③ <u>국내외에 파송하는 선교사의 인사문제는 소속교회 담임자의 천거와 지방 감리사의 제청으로 감리회 본부에서 선교사로 인준한 후 이를 연회 감독이 소속 선교사로 파송하고 감독 회장이 연명한다. 단, 평신도 선교사는 선교국에서 인준하고</u></p>	<p>【179】 제78조(교역자의 기관파송) <개정></p> <p>① <u>교역자의 기관파송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한다. <개정></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교역자는 제00조 제3항에 규정한 기관에 파송할 수 있다.</u> 2. <u>제00조 제3항에 규정한 기관에 파송을 받고자 하는 교역자는 해당 기관장의 기관파송청원서, 채용결의서, 급여지급확인서, 연간 예산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3. <u>제2호에 의한 파송청원을 접수된 때에는 연회장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파송한다.</u> <p>② <u>연회장은 교역자를 기관에 파송할 경우 기관파송과 동시에 소속교회에 파송하여야 한다. <개정></u></p> <p>③ <u>제1항에 의하여 파송된 교역자가 파송기관에서 사직할 경우 사직과 동시에 기관파송은 취소되며, 소속교회의 파송 또한 별도의 조치없이 취소된다. <개정></u></p>	<p>제00조(수련목회자 파송교회 및 기관) 3항 참조</p>

현행	개정안	비고
<p><u>교회에서 파송하며 연회에 보고한다.</u></p> <p>④ <u>부부 교역자는 같은 교회에서 담임자와 부담임자로 사역할 수 없다. 다만, 담임자의 배우자가 해당 분야의 기관사역을 원할 때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결의와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연회 감독이 기관목사로 파송할 수 있다.</u></p> <p>⑤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수련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다.</p> <p>⑥ 선교사는 선교사 보고서에 입출국 서류를 포함하여 보고해야 하며, 선교지를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한 경우 진급을 보류한다.</p>	<p>④ <u>부부 교역자는 같은 교회에서 담임자와 부담임자로 사역할 수 없다. 다만, 개체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에는 파송할 수 있다.</u> <개정></p> <p>⑤ <u>교역자 선교사는 국외선교사관리규정에 따라 연회장이 파송하며, 선교지를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한 경우 진급을 보류한다.</u> <개정></p>	
<p>【180】 제79조(교역자 인사기록의 작성과 관리) 교역자의 인사기록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작성하여 관리한다.</p> <p>① 교역자의 인사기록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그 원본은 연회에서, 부분은 감리회 본부에서 보존한다.</p> <p>② 교역자는 자기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기록 수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교역자가 자기의 인사처리와 관련하여 인사기록이 필요한 때는 연회에서 부분을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교역자의 인사기록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한다.</p>	<p>【180】 제79조(교역자의 인사기록 관리) 교역자의 인사기록 관리는 <u>다음과 같다.</u> <개정></p> <p>① <u>감리회본부 및 연회본부는 다음 각 호의 교역자 인사기록에 관한 서류의 그 원본은 연회에서, 부분은 감리회 본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u> <개정></p> <p>1. <u>가족관계증명서</u></p> <p>2. <u>최종학력증명서 사본</u></p> <p>3. <u>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u></p> <p>4. <u>그 밖에 인사에 관한 기록</u></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182】 제81조(교역자의 은퇴) 교역자의 은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3월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교역자는 당해연도 연회에서 은</p>	<p>【182】 제81조(교역자의 은퇴) 교역자의 은퇴는 <u>다음과 같다.</u> <개정></p> <p>① <좌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퇴한다.</p> <p>② 교역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연회에서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체교회나 기관은 잔여임기에 대하여 노후 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2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연회에서 공상 은퇴할 수 있다.</p> <p>④ 연회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p> <p>⑤ <u>감독회장은 임기를 마친 후 처음 개최되는 연회에서 은퇴한다.</u></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u>은퇴한 교역자는 원로목사라 칭하며, 연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u> <개정></p>	<p>⑤ 감독회장 임기후 은퇴 삭제, 원로목사 명칭 도입</p>
<p>[183] 제82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다음 각 항의 절차를 따른다.</p> <p>① 어느 회원이든지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p> <p>② 본인의 요청이나 2년간 계속 미과 된 이는 휴직 처리한다.</p> <p>③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할 경우 감독이 그 직임을 정지시킨다.</p> <p>④ 어느 회원이든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는 감독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⑤ 4년 간 계속 정직이나 휴직된 이는 퇴회시킨다.</p> <p>⑥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를 부목사와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p> <p>⑦ 미과 된 이는 미과 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든 회원권은 정지된다.</p> <p>⑧ 은퇴한 목사가 감리회가 인정하지 않은 타 교회 및 타 교파의 직책을 맡는 등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고 인정되어 해당 연회 감독의 통보를 받을 때는 은급재단이사회의 결의로 은급비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다.</p>	<p>[183] 제44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u>다음과 같다.</u> <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p>⑥ <좌동></p> <p>⑦ <좌동></p> <p>⑧ <좌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p> <p>【185】 제84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u>10년</u> 급을 필하고 회기를 마친 이. 다만, 해당되는 이가 없는 경우에는 연급 순에 따라 감리사 서리가 된다.</p> <p>② 해당 지방에서 2년 이상 시무한 이. 다만, 해당되는 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이 제2항보다 우선한다.</p> <p>③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나 미자립교회의 담임자 및 소속목사는 감리사 피선거권이 없다. 미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p> <p>【185】 제84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u>다음과 같다.</u> <개정></p> <p>①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u>12년 급을 필하고</u> 회기를 마친 <u>사람.</u> <개정></p> <p>② 해당 지방회에서 <u>4년 이상 시무한 사람.</u> <개정></p> <p>③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나 <u>최근 2년간</u> 미자립교회의 담임자 및 소속교역자는 감리사 피선거권이 없다. 미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p> <p>④ <u>정회원이 된 이후에 교회재판법에서 정적이상이나 국가 형법에 의해 금고형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사람</u> <신설></p> <p>⑤ <u>총회가 정한 연수과정을 2회 이상 필한 사람</u> <신설></p>	<p>감리사의 자격 강화</p> <p>10년급에서 12년급,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함, 최근 2년간 미자립교회 담임자 불가(2017년부터 적용, 부칙 경과조치)</p> <p>불법행위자 불가</p> <p>연수2회 미이수자 제한</p>
<p>【186】 제85조(감리사의 임기) 감리사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u>감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리사 서리의 임기도 이와 같다.</u></p> <p>② <u>감리사가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해당 연회 감독이 소집한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임기로 여기지 않는다.</u></p> <p>③ 감리사의 임기 만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는 감리사에 재선될 수 없다.</p>	<p>【186】 제85조(감리사의 임기) 감리사의 임기는 <u>다음과 같다.</u> <개정></p> <p>① <u>감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없다.</u><개정></p> <p>② <u>감리사가 임기 중 유고나 궐위시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연회 연회장이 소집한 임시지방회에서 보선하고, 1년 미만인 경우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한다.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임기로 여기지 아니한다.</u><개정></p> <p>③ <좌동></p>	<p>연임불가</p> <p>임기 1년 미만인자 감리사 역임 명기 불가</p>
<p>【187】 제86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187】 제86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은 <u>다음과 같다.</u> <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① <u>감리사는 연회에서 지방회별로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가 선출하고 감독이 임명한다.</u></p> <p>② <u>감리사의 선출은 제84조의 자격을 갖춘 교역자 중에서 선출하되 재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u></p>	<p>① <u>감리사는 제84조의 자격을 갖춘 교역자 중 지방회에서 지방회원을 선거권자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표일 때에는 연급순, 연장순으로 선출하고 연회에서 연회장이 임명한다.<개정></u></p> <p>② <u>후보자가 1명이거나 다른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여 단일 후보가 된 때에는 투표를 생략하고 당선을 선포한다.<개정></u></p> <p>③ <u>감리사 선거는 지방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지방회 30일전에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등록신청서(소정양식) 2통</u> 2. <u>이력서 2통</u> 3. <u>명함판 사진 3매</u> 4. <u>경력증명서(연수과정 이수확인서 포함) 2통</u> 5. <u>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유지재단 발행) 2통</u> 6. <u>최근 2년간 각종 부담금 완납 확인서 각 2통</u> 7. <u>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 2통</u> 8. <u>제7편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 2통(연회 발행)</u> 9. <u>범죄경력조회확인서</u> 10. <u>건강진단서(종합병원 발행) 2통</u> <p>④ <u>기타사항은 감독·연회장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금지사항), 제38조(벌칙처벌)를 적용한다.<신설></u></p> <p>⑤ <u>등록금은 지방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u></p> <p>⑥ <u>기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인사위원회에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신설></u></p>	<p>감리사의 선출과정 및 구비서류 명시</p>
<p>제 5 장 감독과 연회 본부</p> <p>【195】 제94조(<u>감독과 연회 본부</u>)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하</p>	<p>제 5 장 <u>연회장</u>과 연회 본부</p> <p>【195】 제94조(<u>연회장</u>과 연회 본부)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p>	<p>감독을 연회장으로 변경</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기 위해 연회 본부를 연회마다 설치하고 해당 <u>감독</u>이 관장한다.</p>	<p>하기 위해 연회 본부를 연회마다 설치하고 해당 연회 <u>연회장</u>이 관장한다.<개정></p>	
<p>【196】 제95조(<u>감독의 자격과 선출</u>) <u>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u></p> <p>①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1인이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p> <p>②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③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p>	<p>【196】 제95조(<u>연회장의 자격과 선출</u>) <u>연회장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과 같다.</u> <개정></p> <p>①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u>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며</u>,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개정></p> <p>② <좌동></p> <p>③ <u>감독 및 연회장 선거법</u>에 따라 연회장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 <개정></p> <p>④ <u>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u> <신설></p>	<p>정회원 연수과정 강화</p> <p>국적조항 신설</p>
<p>【197】 제96조(<u>감독의 임기</u>) <u>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유고시 보선된 감독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보선된 감독이 1년 미만 시무하였을 경우 1차임기로 여기지 않는다.</u></p>	<p>【197】 제96조(<u>연회장의 임기</u>) <u>연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고시 보선된 연회장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보선된 연회장이 1년 미만 시무하였을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u> <개정></p>	
<p>【198】 제97조(<u>감독의 직무</u>) <u>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u></p> <p>① <u>감독</u>은 해당 연회의 영적, 행정적 최고 임원으로서 개체교회, 지방회 및 연회의 신령상 문제와 연회의 행정과 사업 시행 상황을 감독하며 소속 지방과 개체교회를 순방 시찰한다.</p> <p>② <u>감독</u>은 감리회 본부 각 국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회 각 집행부를 통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감독하며 지방회와 개체교회별로 실시된 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한다.</p> <p>③ <u>감독</u>은 목사 2인 이상의 보좌를 받아 목사안수례를 집행</p>	<p>【198】 제97조(<u>연회장의 직무</u>) <u>연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u> <개정></p> <p>① <u>연회장은</u> 해당 연회의 영적, 행정적 최고 임원으로서 개체교회, 지방회 및 연회의 신령상 문제와 연회의 행정과 사업 시행 상황을 감독하며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를 순방 시찰한다. <개정></p> <p>② <u>연회장은</u> 감리회 본부 각 국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회 각 집행부를 통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감독하며 지방회와 개체교회별로 실시된 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한다. <개정></p> <p>③ <u>연회장은</u> 목사 2명 이상의 보좌를 받아 목사안수례를 집행</p>	<p>감독→연회장</p>

현행	개정안	비고
<p>다.</p> <p>④ 감독은 연회 개회시에 그 의장이 되며, 직권상 총회 실행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⑤ 감독은 연회 개회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를 직접 해석하든지 아니면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회부하든지 그 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와 재판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p> <p>⑥ 감독은 의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청한 교역자를 임면한다.</p> <p>⑦ 감독은 감리회 소속기관 외에 전도사업에 필요한 기관, 단체 등에 교역자를 파송하고 임면한다. 단, 파송기관 및 단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⑧ 감독은 연회에서 선출된 감리사를 임면하고 자신이 천거한 연회 총무 후보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연회 총무로 임면한다.</p> <p>⑨ 감독은 감리사 또는 연회 총무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사는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총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도록 한다. 이 경우 보선된 감리사와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⑩ 감독은 연회의 신령상 형편과 행정, 그리고 연회 사업의 계획과 실적을 연회와 총회에 보고한다.</p> <p>⑪ 감독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회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p> <p>⑫ 감독은 연회 내에 법에 따라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데도 지방회에서 6개월 이상 개척 설립보고를 아니할 경우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립토록 한다.</p> <p>⑬ 감독회장을 제외한 연회 감독들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삼분하여 직권상 이사가 된다. 그 해당 대학교는 감독회의에서 결정한다. 감독들의 이사 임기는</p>	<p>한다. <개정></p> <p>④ 연회장은 연회 개회시에 그 의장이 되며,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p> <p>⑤ 연회장은 연회 개회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를 직접 해석하든지 아니면 연회 재판위원회 회부하여 그 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p> <p>⑥ 연회장은 의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청한 교역자를 임면한다. <개정></p> <p>⑦ 연회장은 감리회 소속기관 외에 전도사업에 필요한 기관, 단체 등에 교역자를 파송하고 임면한다. 다만, 파송기관 및 단체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p> <p>⑧ 연회장은 연회에서 선출된 감리사를 임면하고 자신이 천거한 연회 총무 후보를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연회 총무로 임면한다.<개정></p> <p>⑨ 연회장은 감리사 또는 연회 총무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사는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총무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도록 한다. 이 경우 보선된 감리사와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p> <p>⑩ 연회장은 연회의 신령상 형편과 행정, 그리고 연회 사업의 계획과 실적을 연회와 총회에 보고한다.<개정></p> <p>⑪ 연회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회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p> <p>⑫ 연회장은 연회 내에 법에 따라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데도 지방회에서 6개월 이상 개척 설립보고를 아니할 경우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립토록 한다.<개정></p> <p>⑬ 감독을 제외한 연회장들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삼분하여 직권상 이사가 된다. 그 해당 대학교는 연회장회의에서 결정한다. 연회장들의 이사 임기는 연회</p>	<p>감독→연회장</p>

현행	개정안	비고
<p>감독의 임기와 동일하다. 다만, 협성대학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정할 때까지 운영이사가 된다.</p> <p>⑭ 감독은 개체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여부를 조사 처리한다.</p> <p>⑮ 감독은 연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해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결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p> <p>⑯ 감독은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하거나 화해조정에 불응할 경우와 사회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지방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자의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p> <p>⑰ 연회 감독은 감독으로 호칭하며 예우한다.</p> <p>⑱ 감독은 지방 내 불성실한 교역자 처리에 관하여 감리사가 직무를 유기했을 경우 해당 감리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p>	<p>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개정></p> <p>⑭ 연회장은 개체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여부를 조사 처리한다.<개정></p> <p>⑮ 연회장은 연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해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개정></p> <p>⑯ 연회장은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하거나 화해조정에 불응할 경우와 국가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자의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p> <p>⑰ 연회장은 연회장으로 호칭하며 예우한다.</p> <p>⑱ 연회장은 지방회 내 불성실한 교역자 처리에 관하여 감리사가 직무를 유기했을 경우 해당 감리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p> <p>⑲ <삭제></p>	<p>⑰ 연회 감독 호칭 삭제 ⑱, ⑲ 로 이동</p>
<p>[199] 제98조(감독의 취임선서) <u>감독은</u>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p> <p>“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u>감독의</u>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p>	<p>[199] 제98조(연회장의 취임선서) 연회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p> <p>“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연회장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p>	<p>감독→연회장</p>
<p>[206] 제105조(연회 총무의 임면) 연회 총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감독이 임면한다.</p>	<p>[206] 제105조(연회 총무의 임면) 연회 총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연회장이 임면한다.</p>	<p>감독→연회장</p>
<p>[207] 제106조(연회 총무의 직무) 연회 총무의 직무는 다음 각항과 같다.</p> <p>① 연회 총무는 <u>감독의</u> 명을 받아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연회 자체 사업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p>	<p>[207] 제106조(연회 총무의 직무) 연회 총무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p> <p>① 연회 총무는 연회장의 명을 받아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연회 자체 사업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개정></p>	<p>감독→연회장</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연회 총무는 감리회 본부와 소속 지방회 및 개체교회와의 업무연락을 취하며 연회의 각부 사업 및 행정사무 일체를 직접 집행하거나 협동총무 또는 간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 관계서류를 분류 정리하여 보존한다.</p> <p>③ 연회 총무는 연회에서 책정한 수입지출 예산서에 따라 각 지방회에 배정한 부담금을 수납하여 예산 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p> <p>④ 연회 총무는 연회, 지방회 및 개체교회의 교세를 포함한 각종 통계표를 작성하여 연회와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p> <p>⑤ 연회 총무의 행정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내규로 정한다.</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p>[212] 제111조(연회 간사) 연회 각 부 사업의 집행과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수의 간사를 둘 수 있다.</p> <p>① 연회 간사는 연회 총무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연회 사업과 행정업무를 담당한다.</p> <p>② 연회 간사는 연회 총무의 제청으로 감독이 임면한다.</p>	<p>[212] 제111조(연회 간사) 연회 각 부 사업의 집행과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수의 간사를 둘 수 있다.</p> <p>① <좌동></p> <p>② 연회 간사는 연회 총무의 제청으로 연회장이 임면한다. <개정></p>	<p>감독→연회장</p>
<p>제7조(선교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선교연회는 감독회장, 관리자, 서기, 감리사, 평신도 대표로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교·교육·사회·평신도위원장, 남·여 선교회연합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장, 교회학교연합회장, 감사는 발언권만 갖는다.</p>	<p>[221] 제120조(선교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선교연회는 감독, 관리자, 서기, 감리사, 평신도 대표로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교·교육·사회·평신도위원장, 남·여 선교회연합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장, 교회학교연합회장, 감사는 발언권만 갖는다.<개정></p>	<p>감독회장→감독</p>
<p>제8조(선교연회의 직무)</p> <p>① 선교연회의 직무는 연회직무에 준한다.</p> <p>② 선교연회는 매년 1회 모이고 감독회장이 주관한다.</p> <p>③ 선교연회 관리자는 그 사업을 감독회장에게 보고한다.</p> <p>④ 선교연회는 총회대표 중에서 총회 실행부위원을 제외한 감</p>	<p>[222] 제120조(선교연회의 직무)</p> <p>① <좌동></p> <p>② 선교연회는 매년 1회 모이고 감독이 주관한다. <개정></p> <p>③ 선교연회 관리자는 그 사업을 감독에게 보고한다 <개정></p> <p>④ 선교연회는 총회대표 중에서 총회 실행부위원을 제외한 감리</p>	<p>감독회장→감독</p> <p>④ ‘다만...’ 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p>리회본부 각국·원 위원 및 재단이사과 각 위원회 위원 1명을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심사·재판·조정과 관련된 위원은 제외한다.</p> <p>⑤ 선교연회는 선교의 편의를 위하여 장정에 준하여 별도의 내규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p>	<p>회본부 각국·원 위원 및 재단이사과 각 위원회 위원 1명을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개정></p> <p>⑤ <좌동></p>	
<p>제 7 장 미주특별연회</p> <p>【221】 제120조(미주특별연회 조직의 목적) 미주특별연회는 미주지역 안에 있는 한국 감리교회들로 구성하며 교회재산 관리와 교역자은급제도의 시행 및 종교법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보유함에 있어서 미국 국내법에 따라 연회를 조직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특별연회를 조직한다.</p>	<p>제 7 장 미주특별연회</p> <p>【221】 <삭제></p>	
<p>【222】 제121조(미주특별연회 준용규정) 미주특별연회의 조직,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회의 조직과 행정에 관한 장정 규정을 준용하되 입법의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되거나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222】 <삭제></p>	
<p>【223】 제122조(미주특별연회 조직의 준칙) 미주특별연회는 제 9편 연회 및 지방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하되 선교지역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연회와 지방의 경계를 조정하여 조직할 수 있다. 다만, 연회경계 조정의 경우에는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223】 <삭제></p>	
<p>【224】 제123조(미주특별연회 재산관리) 미주특별연회에 소속된 교회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부동산)은 미국 국내법에 따라 설치된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며 편입된 부동산의 처분 및 기채를 위한 담보설정 등은 해당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224】 <삭제></p>	
<p>【225】 제124조(미주특별연회 감독제도와 자격) 미주특별연회의 감독은 미주특별연회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하고 임기는 2년 겸임제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p>	<p>【225】 <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p>【226】 제125조(미주특별연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 미주특별연회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으로 구성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관장하도록 하고, 선거관리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을 준용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p>	<p>【226】 <삭제></p>	
<p>【227】 제126조(미주특별연회 감독의 직무) 미주특별연회 감독의 직무는 연회 감독의 직무에 준하며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권상 위원이 되고 미주특별연회에 있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의 직권상 이사가 된다.</p>	<p>【227】 <삭제></p>	
<p>【229】 제128조(미주특별연회 운영을 위한 규정 및 규칙) 미주특별연회는 연회의 특성상 필요한 규정과 규칙을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하며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입법의회가 단혀 있는 동안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이 경우 장정의 헌법과 법률 정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p>	<p>【229】 제000조(미주특별연회의 자치권) 미주특별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특별연회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운영한다. 미주특별연회가 자치법을 제정, 개정, 폐지한 경우에는 감독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p>	
<p>제 8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p> <p>제 1 절 총 칙</p> <p>【230】 제129조(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감리회의 정책과 사업 및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감리회 본부를 설치하고 감독회장이 행정수반이 되어 관장한다. 감리회 본부는 국내외적으로 감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p>	<p>제 8 장 감독과 감리회 본부</p> <p>제 1 절 총 칙</p> <p>【230】 제129조(감독과 감리회 본부) 감리회의 정책과 사업 및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감리회 본부를 설치하고 감독이 행정수반이 되어 관장한다. 감리회 본부는 국내외적으로 감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개정></p>	
<p>제 2 절 감독회장</p> <p>【232】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 무흠하게 시무하고,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p> <p>②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 불가한 경</p>	<p>제 2 절 감독</p> <p>【232】 제131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과 같다. <개정></p> <p>①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계속 시무한 사람으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p>	<p>정회원 연수 강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우는 제외)한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③ <u>감독, 감독회장</u> 선거법에 따라 <u>감독회장</u>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p>	<p>만,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개정></p> <p>② <좌동></p> <p>③ <u>감독 및 연회장</u> 선거법에 따라 <u>감독</u>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u>사람</u>. <신설></p> <p>④ <u>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u>. <개정></p>	<p>국적 조항 신설</p>
<p>[233] 제132조(감독회장의 임기) <u>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u>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단, 유고시 보선된 <u>감독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u> 하며 보선된 <u>감독회장이 2년</u> 미만을 시무하였을 경우 1차임기로 여기지 않는다.</p>	<p>[233] 제132조(감독의 임기) <u>감독의 임기는 2년</u>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다만, 유고시 보선된 <u>감독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u> 하며 보선된 <u>감독이 1년</u> 미만을 시무하였을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p>	
<p>[234] 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 <u>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음 각항과 같다</u>.</p> <p>① <u>감독회장은</u>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총무, 원장, 실장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② <u>감독회장은</u> 임기 중에 서부선교연회, 호남선교연회를 관리한다.</p> <p>③ <u>감독회장은</u>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p> <p>④ <u>감독회장은</u>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p> <p>⑤ <u>감독회장은</u>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p> <p>⑥ <u>감독회장은</u>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p> <p>⑦ <u>감독회장은</u>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p> <p>⑧ <u>감독회장은</u>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p> <p>⑨ <u>감독회장은</u> 임기 중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직책상 위원이 된다.</p>	<p>[234] 제133조(감독의 직무) <u>감독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u>. <개정></p> <p>① <u>감독은</u>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u>총무, 실장, 원장</u>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p> <p>② <u>감독은</u> 임기 중에 서부선교연회, 호남선교연회를 관리한다. <개정></p> <p>③ <u>감독은</u>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개정></p> <p>④ <u>감독은</u>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u>기독교대한감리회</u> 태화복지재단의 <u>이사 1명을 추천한다</u>. <개정></p> <p>⑤ <u>감독은</u>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p> <p>⑥ <u>감독은</u>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p> <p>⑦ <삭제></p> <p>⑦ <u>감독은</u>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p> <p>⑧ <u>감독은</u> 임기 중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직책상 위원이 된다. <개정></p>	<p>감독회장→감독</p> <p>⑦항 이사회에서 호선</p> <p>⑧항→⑦항</p> <p>⑨항→⑧항</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⑩ 감독회장은 입법의회에서 의결한 헌법 또는 법률의 시행을 공포한다.</p> <p>⑪ 감독회장은 각 국의 위원회(이사회)에서 선출한 총무를 임면한다.</p> <p>⑫ 감독회장은 행정기획실장을 천거하고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이를 임면한다.</p> <p>⑬ 감독회장은 각 국 총무, 원장, 실장의 제청을 받아 부총무 및 부장을 임면한다.</p> <p>⑭ 감독회장은 연수원 원장을 천거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p> <p>⑮ 감독회장은 장정과 본부 내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p> <p>⑯ 감독회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이사가 된다. <u>감독회장의</u> 이사 임기는 <u>감독회장의</u> 임기와 동일하다.</p> <p>⑰ 감독회장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접수된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차기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p> <p>⑱ 감독회장은 총회, 입법의회, 총회 실행부위원회 및 감독회의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u>감독회장이</u>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⑲ 감독회장은 총회 개회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의 문제를 직접 해석하거나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p> <p>⑳ 감독회장은 월간 「기독교세계」와 주간 「기독교타임즈」의 발행인이 되며 주간 「기독교타임즈」의 이사장이 된다. 다만, 주간 「기독교타임즈」 발행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두고 운영한다.</p>	<p>⑨ 감독은 입법의회에서 의결한 헌법 또는 법률의 시행을 공포한다. <개정></p> <p>⑩ 감독은 각 국의 위원회(이사회)에서 선출한 총무를 임면한다.</p> <p>⑪ 감독은 행정기획실장을 천거하고 연회장회의의 인준을 받아 이를 임면한다.</p> <p>⑬ <삭제></p> <p>⑫ 감독은 연수원 원장을 천거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개정></p> <p>⑬ 감독은 장정과 본부 내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개정></p> <p>⑭ 감독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이사가 된다. <u>감독의</u> 이사 임기는 <u>감독의</u> 임기와 동일하다. <개정></p> <p>⑮ 감독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접수된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차기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p> <p>⑯ 감독은 총회, 총회 실행부위원회 및 연회장회의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u>감독이</u>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u>감독이 지명하는 연회장이</u>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p> <p>⑰ 감독은 총회 개회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의 문제를 직접 해석하거나 총회재판위원회 회부하여 결정한다. <개정></p> <p>⑱ 감독은 도서출판 KMC, 월간 「기독교세계」와 주간 「기독교타임즈」사의 발행인이 된다. <개정></p>	<p>감독회장→감독</p> <p>⑩항→⑨항</p> <p>⑪항→⑩항</p> <p>⑫항→⑪항</p> <p>⑬ 부총무, 부장 삭제</p> <p>⑭항→⑫항</p> <p>⑮항→⑬항</p> <p>⑯항→⑭항</p> <p>⑰항→⑮항</p> <p>⑱항→⑯항</p> <p>⑲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폐지</p> <p>⑳항→⑱항</p>

현행	개정안	비고
<p>㉑ 감독회장은 총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결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p>	<p>㉑ 감독은 총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개정></p> <p>㉒ 감독은 <u>태화복지재단(교역자, 평신도 각 2명), 사회복지재단(교역자, 평신도 각 3명)를 파송한다.</u><신설></p>	<p>㉑항→㉑항</p>
<p>[235] 제134조(감독회장의 취임선서) 감독회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p> <p>“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u>감독회장의</u>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p>	<p>[235] 제134조(<u>감독의</u> 취임선서) 감독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p> <p>“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u>감독의</u>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p>	
<p>[236] 제135조(전직 <u>감독회장의</u> 예우) <u>감독회장</u>을 지내고 퇴임하는 이는 전직 감독으로 예우한다.</p>	<p>[236] 제135조(전직 <u>감독의</u> 예우) <u>감독</u>을 지내고 퇴임하는 <u>사람</u>은 전직 감독으로 예우한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본부조직</p> <p>[237] 제136조(본부의 조직) 감리회의 각종 정책수립과 행정, 선교, 교육, 평신도사업, 유지재단, 은급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의 관리 및 출판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로 감리회 본부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본부조직</p> <p>[237] 제136조(<u>감리회본부의</u> 설치) 감리회의 각종 정책수립과 행정, 선교, 교육, 평신도사업, <u>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u> 유지재단, <u>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u> 은급재단, <u>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u> 태화복지재단, <u>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u> 사회복지재단, <u>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u> 장학재단의 관리 및 출판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로 감리회 본부를 둔다. <개정></p>	<p>정확한 명칭 추가</p>
<p>[238] 제137조(본부의 부서) 본부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p> <p>① 선교국 ② 교육국 ③ 사회평신도국 ④ 사무국 ⑤ 출판국 ⑥ 연수원</p>	<p>[238] 제137조(본부의 부서) 본부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p> <p>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삭제> ⑥ <좌동></p>	<p>⑤ ‘출판국’은 [도서출판 KMC] 특별법으로 이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⑦ 행정기획실</p> <p>【239】 제138조(선교국의 조직) 국내외의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선교국을 조직하고 <u>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u></p> <p>① 총무 1명 ② 부총무 1명(해외선교 담당) ③ <u>국내선교부, 사회농어촌환경부, 해외선교기획부, 선교사관리부 부장 각 1명</u></p>	<p>⑦ <좌동></p> <p>【239】 제138조(선교국의 조직) 국내외의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선교국을 조직하고 <u>총무 1명과 직원을 둔다.</u> <개정></p> <p>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p>	
<p>【240】 제139조(선교국의 직무) 선교국의 직무는 <u>다음 각 항과 같다.</u></p> <p>① <u>교회개혁과 교회성장, 이주민선교 등 국내선교정책에 관한 업무</u> ② <u>농어촌 환경선교 및 특수선교사업과 사회선교정책에 관한 업무</u> ③ <u>선교관계책자의 편집과 자료수집에 관한 업무</u> ④ <u>북한선교정책, 새터민(탈북민)선교정책 및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업무</u> ⑤ <u>국내외 교회일치운동의 협력에 관한 업무</u> ⑥ <u>군목, 군인교회 전담 목회자의 관리 등 군선교정책 및 제반 업무</u> ⑦ <u>세계선교정책 수립과 시행 업무</u></p> <p>⑧ <u>선교훈련과 인적, 물적 자원 개발에 관한 업무</u> ⑨ <u>세계교회와의 선교협약 체결 및 선교협력에 관한 업무</u> ⑩ <u>전략적 선교지 개발 및 정책적 파송에 관한 업무</u> ⑪ <u>선교사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u> ⑫ <u>해외교민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u></p>	<p>【240】 제139조(선교국의 직무) 선교국의 직무는 <u>다음과 같다.</u> <개정></p> <p>① <u>교회성장 및 교회개혁, 미자립교회 등에 관한 정책 및 업무</u> <개정> ② <u>군목, 군인교회 전담 목회자의 관리 등 군선교정책 및 제반 업무</u> <개정> ③ <u>신앙과 직제와 관련한 제반 정책 수립</u> <개정> ④ <u>북한선교정책, 새터민(탈북민)선교정책 및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업무</u> <개정> ⑤ <u>에큐메니칼 및 교회 일치와 관련한 정책 및 업무</u> <개정> ⑥ <u>대사회선교 및 농어촌, 환경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u> <개정> ⑦ <u>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및 빈민 선교 등에 관한 선교정책</u> <개정> ⑧ <u>세계선교정책 수립과 시행업무</u> <개정> ⑨ <u>선교 관련 홍보 및 자료집 발간에 관한 업무</u> <개정> ⑩ <u>선교훈련과 인적, 물적 자원 개발에 관한 업무</u> <개정> ⑪ <u>해외교민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u> <개정> ⑫ <u>세계교회와의 선교협약 체결 및 정책적 파송에 관한 업무</u></p>	

현행	개정안	비고
<p>⑬ <u>국내의 선교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협력에 관한 업무</u></p> <p>⑭ <u>선교후원교회 관리에 관한 업무</u></p>	<p><개정></p> <p>⑬ <u>전략적 선교지 개발 및 정책적 파송에 관한 업무</u> <개정></p> <p>⑭ <u>선교사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u> <개정></p> <p>⑮ <u>국내의 선교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협력에 관한 업무</u> <신설></p> <p>⑯ <u>선교 후원교회 관리에 관한 업무</u> <신설></p> <p>⑰ <u>이슬람 선교 대책에 관한 업무</u> <신설></p>	
<p>【241】 제140조(교육국의 조직) 감리회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교육국을 조직하고 <u>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u></p> <p>① <u>총무 1명</u></p> <p>② <u>교육행정부, 장년교육정책부, 차세대교육정책부, 교육교재부</u> 부장 각 1명</p>	<p>【241】 제140조(교육국의 조직) 감리회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교육국을 조직하고 <u>총무 1명과 직원을 둔다.</u> <개정></p> <p>① <삭제></p> <p>② <삭제></p>	
<p>【243】 제142조(사회평신도국의 조직) 감리회의 평신도운동과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사회평신도국을 조직하고 <u>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u></p> <p>① <u>총무 1명</u></p> <p>② <u>평신도부, 사회봉사부, 사회복지부</u> 부장 각 1명</p>	<p>【243】 제142조(사회평신도국의 조직) 감리회의 평신도운동과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사회평신도국을 조직하고 <u>총무 1명과 직원을 둔다.</u> <개정></p> <p>① <삭제></p> <p>② <삭제></p>	
<p>【244】 제143조(사회평신도국의 직무) 사회평신도국의 직무는 <u>다음 각 항과 같다.</u></p> <p>①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의 지도 육성</p> <p>② 평신도 훈련과 평신도 지도자 육성 및 연수교육</p> <p>③ 국내외 선교사업 지원과 교육봉사 사업</p> <p>④ 가정생활운동의 지도육성</p> <p>⑤ 사회봉사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절제운동</p>	<p>【244】 제143조(사회평신도국의 직무) 사회평신도국의 직무는 <u>다음과 같다.</u> <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현행	개정안	비고
⑥ 국제 평신도운동 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사업 ⑦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에 관한 업무 협의 ⑧ 사회복지재단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⑨ <u>평신도 재능기부운동, 신앙실천운동, 희망봉사단 활성화에 관한 업무</u> <신설> ⑩ <u>국내의 재해기금 모금 및 지원업무</u> <신설>	
【245】 제144조(사무국의 조직) 감리회의 유지재단과 은급재단의 관리를 위한 운영정책과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사무국을 조직하고 <u>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u> ① <u>총무 1명</u> ② <u>재산관리부, 회관관리부, 은급부, 재단회계부, 민원부 부장 각 1명</u>	【245】 제144조(사무국의 조직) 감리회의 유지재단의 관리를 위한 운영정책과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사무국을 조직하고 <u>총무 1명과</u> 직원을 둔다. <개정> ① <삭제> ② <삭제>	
【246】 제145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의 직무는 <u>다음 각 항과 같다.</u> ① 감리회관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유지재단과 은급재단에 관한 사무의 관장과 기본재산 대장의 영구보관 ③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계획과 지시에 따른 감리회 본부의 기본재산 관리 ④ 미연합감리회 선교사 묘역관리 ⑤ 유지재단 회계 업무	【246】 제145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의 직무는 <u>다음과 같다.</u> <개정>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247】 제146조(출판국의 조직) 감리회의 기관지,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출판국을 조직하고 <u>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u> ① <u>총무 1명</u>	【247】 제146조(출판국의 조직)<삭제>	도서출판 KMC 특별법을 이동, 독립채산제 운영, 정관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기독교세계」부, 출판부 부장 각 1명</p>		
<p>【248】 제147조(출판국의 직무) 출판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기독교세계」의 기획, 편집, 발행 및 보급</p> <p>② 각종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기획, 편집, 발행</p> <p>③ 각종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보급 및 유통</p>	<p>【248】 제147조(출판국의 직무)<삭제></p>	
<p>【249】 제148조(연수원의 조직) 감리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모든 감리교회와 기관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지도자들의 영성훈련과 교육, 지도력 개발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과제를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p> <p>① 원장 1명</p> <p>② 제1연수부(일영), 제2연수부(입석) 부장 각 1명</p>	<p>【249】 제148조(연수원의 조직) 감리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모든 감리교회와 기관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지도자들의 영성훈련과 교육, 지도력 개발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과제를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조직하고 <u>원장 1명과</u> 직원을 둔다. <개정></p> <p>① <삭제></p> <p>② <삭제></p>	
<p>【251】 제150조(행정기획실의 조직) 총회 및 감독회의와 감리회 본부의 행정기획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기획실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p> <p>① 행정기획실장 1명</p> <p>② 총회행정부, 기획홍보부, 역사전산부, 서무행정부, 본부회계부 부장 각 1명</p>	<p>【251】 제150조(행정기획실의 조직) 총회 및 <u>연희장</u> 회의와 감리회 본부의 행정기획 및 은급재단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기획실을 조직하고 <u>실장 1명과</u> 직원을 둔다. <개정></p> <p>① <삭제></p> <p>② <삭제></p>	
<p>【252】 제151조(행정기획실의 직무) 행정기획실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감독회의의 행정에 관한 사항</p> <p>② 총회 및 입법의회의의 행정에 관한 사항</p> <p>③ 감독회장에 대한 비서업무</p> <p>④ 감리회 역사자료 수집 및 관리, 감리회 정보화 사업, 목회자와 교회 정보관리, 인터넷 서버운영에 관한 업무</p> <p>⑤ 감리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획업무, 각 국 정책업무의 조율, 업무협조 및 홍보에 관한 업무</p>	<p>【252】 제151조(행정기획실의 직무) 행정기획실의 직무는 <u>다음과 같다.</u></p> <p>① <u>연희장</u> 회의의 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p> <p>② <좌동></p> <p>③ <u>감독</u>에 대한 비서업무 <개정></p> <p>④ <좌동></p> <p>⑤ <좌동></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⑥ 감리회 본부의 인사와 서무행정에 관한 사항 ⑦ 감리회 본부의 재정운영과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⑧ 각 국 및 각 연회와의 행정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⑨ 행정상의 대외적 업무연락에 관한 사항 ⑩ 각 국에 속하지 않은 행정사항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⑨ <좌동> ⑩ <좌동>	
【253】 제152조(총무의 직무) 각 국 총무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u>감독회장</u> 을 보좌하여 장정에 규정된 각 국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한 정책 및 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③ 해당국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직원의 추천 및 해임을 건의한다.	【253】 제152조(총무의 직무) 각 국 총무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감독 을 보좌하여 장정에 규정된 각 국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254】 제153조(총무, 원장, 실장의 자격) 총무, 원장, 실장은 40세 이상이 되고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시무하였거나 장로서 6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한다.	【254】 제153조(총무, 실장, 원장 의 자격) 총무, 실장, 원장 은 40세 이상이 되고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시무하였거나 장로서 6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한다. <개정>	
【255】 제154조(총무, 원장, 실장, 부총무의 임면) 본부의 총무, 원장, 실장, 부총무의 임면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부의 각 국 총무는 <u>감독회장</u> 이 해당 국 위원장과 협의하여 후보 2명을 각 국위원회(이사회)에 추천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임명한다. ② 총무가 결원일 경우 <u>감독회장</u> 은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후임 총무를 보선하여 임명한다. ③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평신도로 하되 가급적 사회복지 전문가로 한다. ④ 행정기획실장은 <u>감독회장</u> 이 천거하여 <u>감독회의</u> 의 인준을 받	【255】 제154조(총무, 실장, 원장 의 임면) 본부의 총무, 실장, 원장 의 임면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본부의 각 국 총무는 감독 이 해당 국 위원장과 협의하여 후보 2명을 각 국위원회(이사회)에 추천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임명한다. <개정> ② 총무가 결원일 경우 감독 은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후임 총무를 보선하여 임명한다. <개정> ③ <좌동> ④ 행정기획실장은 감독 이 천거하여 연회장회의 의 인준을 받아	

현행	개정안	비고
<p>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p> <p>⑤ 원장은 <u>감독회장</u>의 천거로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p> <p>⑥ 교회법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았거나 <u>사회법(형법)</u>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이로 한다.</p> <p>⑦ 부총무는 해당 국 총무의 천거로 감독회장이 임면한다.</p>	<p><u>감독</u>이 임면한다. <개정></p> <p>⑤ 원장은 <u>감독</u>의 천거로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개정></p> <p>⑥ <u>교역자는 정회원이 된 후, 장로는 장로 안수 받은 후에</u> 교회법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았거나 <u>국가 형법에</u>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이로 한다. <개정></p> <p>⑦ <삭제></p>	
<p>【256】 제155조(총무, 원장, 실장의 임기) 총무, 원장, <u>실장</u>의 임기는 선임된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임기로 여기지 않는다.</p>	<p>【256】 제155조(<u>총무, 실장, 원장</u>의 임기)</p> <p>① <u>총무, 원장의 임기는 선임된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u> <개정></p> <p>② <u>행정기획실장의 임기는 감독의 임기와 같다.</u> <신설></p>	
<p>제 4 절 본부 각 국·원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p> <p>【257】 제156조(본부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본부 각 국·원 위원회와 각 재단에 이사회를 다음 <u>각 항과</u> 같이 설치한다.</p> <p>① 선교국위원회</p> <p>② 교육국위원회</p> <p>③ 사회평신도국위원회</p> <p>④ 출판국위원회</p> <p>⑤ 연수원 운영위원회</p> <p>⑥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p> <p>⑦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p> <p>⑧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p> <p>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사회</p> <p>⑩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사회</p>	<p>제 4 절 본부 각 국·원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p> <p>【257】 제156조(본부 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본부 각 국 위원회와 각 재단에 이사회를 <u>다음과 같이</u> 설치한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삭제></p> <p>⑤ <좌동></p> <p>⑥ <좌동></p> <p>⑦ <좌동></p> <p>⑧ <좌동></p> <p>⑨ 사회복지법인 <u>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사회</u> <개정></p> <p>⑩ <좌동></p>	<p>④ 도서출판 KMC 특별법으로 이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⑪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이사회</p>	<p>⑪ <좌동> ⑫ <u>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이사회</u> <신설> ⑬ <u>학교법인 애향학원 이사회</u> <신설> ⑭ <u>사회복지법인 애향원 이사회</u> <신설></p>	
<p>【259】 제158조(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p> <p>① 각 국·원 위원회의 조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 <u>감독회의</u>에서 호선된 1인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해당 국·원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무·원장을 통하여 보고를 받도록 한다. 총무·원장이 제청하여 국·원의 위원회에서 인준한 전문위원 3인은 해당 위원회에서 발언권만 보유한다. 각 총무·원장은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을 보유한다. <p>② 각 재단이사회의 조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리회유지재단이사회 : 감독회장,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대표 1명과 평신도대표 1명 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 : 감독회장,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대표 1명과 평신도대표 1명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사회 : 감독회장, 감리회대표 6명, 복지관대표 5명, 미연합감리회 선교사대표 2명, 복지전문가 1명 	<p>【259】 제158조(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는 <u>다음과</u> 같이 조직한다. <개정></p> <p>① 각 국 위원회의 조직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회에서 선출한 <u>교역자, 평신도 중 1명</u> <개정> <u>연회장회의</u>에서 호선된 1명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해당 국·원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무·원장을 통하여 보고를 받도록 한다. <개정> 총무·원장이 제청하여 국의 위원회에서 인준한 전문위원 3명은 해당 위원회에서 발언권만 보유한다. <u>다만 선교국 전문위원 3명 중 1명은 선교사 10년 이상 경력자로 한다.</u> <개정> <좌동> <p>② 각 재단 이사회의 조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u>11명으로 하고 감독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u> <개정> 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u>11명과 이사회에서 선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고 감독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u> <개정> <u>장학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11명과 교육국위원장으로 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u> <개정> 	<p>선교국 전문위원중 선교사 전문위원 1명 의무</p>

현행	개정안	비고
<p>4. 사회복지재단이사회 : 감독회장,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대표 1명과 평신도대표 1명, 전문직 이사 3명</p> <p>5. 장학재단이사회 : 감독회장,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대표 1명과 평신도대표 1명</p> <p>6. 각 재단이사회의 이사장은 감독회장이 된다.</p> <p>7. 총무는 직권상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을保有한다.</p>	<p>4. 사회복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 평신도 대표 중 6명과 외부 이사 3명, 시설협의회에서 추천된 1명으로 하고 감독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개정></p> <p>5. 태화복지재단이사회 : 이 법인의 이사는 11명으로 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이 추천한 1명,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선출한 4명, 사업기관대표 2명,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및 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중 대표 1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추천 이사 3명으로 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p> <p>6. <삭제></p> <p>6. 7호와 <좌동></p> <p>7.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회: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이사를 파송한다. <신설></p> <p>8. 기독교 타임즈사, 도서출판 KMC,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의 이사회 조직은 특별법으로 정한다. <신설></p>	
	<p>【000】 제000조 (감리회 본부 임직원의 정원) <신설></p> <p>① 감리회 본부의 임직원의 정원은 2020년까지 68명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p> <p>② 부서별 정원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정한다. <신설></p>	
	<p>【000】 제000조 (임금피크제의 시행) 감리회 본부의 직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신설></p> <p>①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 3년 전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u>한다. <신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직 3년 전 기준급여의 90% 2. 퇴직 2년 전 기준급여의 80% 3. 퇴직 1년 전 기준급여의 70% <p>② <u>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u></p> <p>③ <u>임금피크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000절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신설></u></p> <p><u>【000】 제000조(법인의 설립) 감리회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총회의 의결 후 정관을 제정하여 입법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② <u>법인의 정관에는 설립자가 기독교대한감리회임을 명시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감리회에서 파송한 이사로 선임한다는 것을 명시한다.</u> ③ <u>최초의 이사 선임은 정관에 따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한다.</u> 	
	<p><u>【000】 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정관개정)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제000조에 규정한 감리회 소속 법인의 정관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개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정관 개정안은 당해 법인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의해 발의된 정관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법의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법인의 해산이나 합병, 이사선임 등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시급히 정관을 개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의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 총회실행부위원회</u> 	제000조(법인의 설립)에 규정

현행	개정안	비고
	<p><u>의결로 확정한다.</u> <신설></p> <p>③ 제2항에 의하여 입법의회에서 정관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감독은 30일 이내에 이 사실을 당해 법인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법인 이사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당 정관 개정안을 입법의회가 의결한 대로 개정 한다. <신설></p>	
	<p>【000】 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은 다음과 같다. <신설></p> <p>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p> <p>②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역자은급재단</p> <p>③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장학재단</p> <p>④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p> <p>⑤ 사회복지법인 감리교태화복지재단</p> <p>⑥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p> <p>⑦ 학교법인 감리교학원</p> <p>⑧ 학교법인 삼일학원</p> <p>⑨ 학교법인 이화학당</p> <p>⑩ 학교법인 이화학원</p> <p>⑪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p> <p>⑫ 학교법인 배재학당</p> <p>⑬ 학교법인 배화학원</p> <p>⑭ 학교법인 영명학원</p> <p>⑮ 학교법인 호수돈학원</p> <p>⑯ 학교법인 광성학원</p> <p>⑰ 학교법인 매향학원</p> <p>⑱ 학교법인 송도학원</p> <p>⑲ 학교법인 영화학원</p>	

현행	개정안	비고
	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애향숙 ㉕ 학교법인 애향학원 ㉖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p>【000】 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회) 법인의 이사 파송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p> <p>① 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법인의 이사파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11명으로 하고 감독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개정> 2. 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11명과 이사회에서 선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고 감독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개정> 3. 장학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11명과 교육국위원장으로 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4. 사회복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평신도 대표 중 6명과 외부 이사 3명, 시설협의회에서 추천된 1명으로 하고 감독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개정> 5. 태화복지재단이사회 : 이 법인의 이사는 11명으로 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이 추천한 1명,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선출한 4명, 사업기관대표 2명,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및 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중 대표 1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추천 이사 3명으로 하며 이사장은 아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6.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를 파송한다. <개정> 7.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를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u>파송한다. <개정></u></p> <p>8. <u>학교법인 삼일학원: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를 파송한다. <개정></u></p> <p>② <u>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제9항에서 제19항까지의 법인에 대한 이사파송은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선출하여 파송한다. <신설></u></p> <p>③ <u>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의 이사회 조직은 특별법으로 정한다.</u></p> <p><개정></p>	
	<p>【000】 제000조(기관 및 법인 이사의 임기)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 중 이 법이나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으로 이사에 취임하는 이사의 임기는 이사에 취임한 후 2년으로 한다.<신설></p>	
	<p>【000】 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선출에 관한 특례) 제000조의 법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는 정관개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p> <p>1. <u>“이 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설립하였으며, …… 목적으로 한다.”</u></p> <p>2. <u>“이사 정수의 과반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파송한 사람으로 선임한다.”</u></p> <p>3. <u>“정관 시행 후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후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파송한 이사로 선임한다.”</u></p>	
<p>제 5 절 <u>감독회의</u></p> <p>【261】 제160조(감독회의의 조직) 감리회의 신령상 문제와 각 연회의 행정과 사업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감리회의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u>감독회의</u>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p>	<p>제 5 절 <u>연회장회의</u></p> <p>【261】 제160조(연회장회의의 조직) 감리회의 신령상 문제와 각 연회의 행정과 사업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감리회의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u>연회장회의</u>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개정></p>	<p>감독회의→연회장회의</p>

현행	개정안	비고
<p>① <u>감독회의는 감독회장과 감독들로 구성하며 감독회장이 직권상 의장이 된다.</u></p> <p>② <u>감독회의에</u> 서기 1명을 두며 <u>감독</u> 중에서 이를 선출한다.</p> <p>③ 서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궐위시 보선된 서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① <u>연회장회의는 감독과 연회장들로 구성하며 감독이 직권상 의장이 된다.</u><개정></p> <p>② <u>연회장회의에</u> 서기 1명을 두며 연회장 중에서 이를 선출한다.<개정></p> <p>③ <좌동></p>	
<p>【262】 제161조(감독회의의 직무) 감독회의의 직무는 다음 각항과 같다.</p> <p>① 감리회의 신령상 문제와 사업 및 행정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한다.</p> <p>② 감리회의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며 필요시에는 이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회부한다.</p> <p>③ 감독 중에서 각 국·원에 위원장 1인을 선임하여 파송한다.</p> <p>④ 그 밖에 감리회의 부흥 발전과 원활한 행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p> <p>⑤ 감독회장이 천거한 행정기획실장을 인준한다.</p>	<p>【262】 제161조(<u>연회장 회의의 직무</u>) <u>연회장회의의</u>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u>연회장</u> 중에서 각 국에 위원장 1명을 선임하여 파송한다.</p> <p>④ <좌동></p> <p>⑤ <u>감독이</u> 천거한 행정기획실장을 인준한다. <개정></p> <p>⑥ <u>총회 심사 및 재판위원과 총회 최고재판위원으로 선임될 법조인 7명을 선출한다. 다만, 가급적 연회를 달리하여야 한다.</u><신설></p>	
<p>【263】 제162조(감독회의의 소집) 감독회의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u>감독회장이</u> 소집한다. 또는 감독 3인 이상이 요청하면 감독회장이 소집한다.</p>	<p>【263】 제162조(<u>연회장 회의의 소집</u>) <u>연회장 회의</u>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u>감독이</u> 소집한다. 감독 또는 <u>연회장</u> 3명 이상이 요청하면 <u>감독이</u> 소집한다. <개정></p>	
<p>제 6 절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p> <p>【264】 제163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감리회 본부에 다음과 같은 특별 위원회를 설치한다.</p> <p>①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p> <p>1.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들의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 정책과 재정적 지원문제 그리고 이단사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p>	<p>제 6 절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p> <p>【264】 제163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감리회 본부에 다음과 같은 특별 위원회를 설치한다.</p> <p>①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p> <p>1.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들의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 정책과 재정적 지원문제 그리고 이단사상과 <u>타종교에</u>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개</p>	

현행	개정안	비고
<p>2.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는 해당 연회 감독이 각각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교육국 총무, 전문위원으로 <u>감독회장</u>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으로 구성한다.</p> <p>3.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p> <p>② 장·단기발전위원회</p> <p>1. 감리회의 장·단기 발전을 위해 장·단기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p> <p>2. <u>감독회장</u>과 각 연회 <u>감독</u>이 협의하여 18명으로 구성한다. (단, 본부 각 국 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3. 장·단기 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p> <p>③ 성직위원회</p> <p>1. 교역자 윤리 및 성직 등의 문제를 위해 성직위원회를 설치한다.</p> <p>2. <u>감독회장</u>이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각 연회에서 교역자 1명씩 선정하여 구성한다.</p> <p>3. 성직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p> <p>④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p> <p>1. 미자립교회대책과 교회실태조사 업무를 위해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p> <p>2. 연회에서 선임한 20명(교역자 10명, 평신도 1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p> <p>3.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p> <p>⑤ 역사보존위원회</p> <p>1. 감리교회의 역사자료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역사보존위원회를 설치한다.</p> <p>2. <u>감독회장</u>이 각 연회 <u>감독</u>과 협의하여 교역자와 평신도 중</p>	<p>정></p> <p>2.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는 해당 <u>연회 연회장</u>이 각각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교육국 총무, 전문위원으로 <u>감독</u>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p> <p>3. <좌동></p> <p>② 장·단기발전위원회</p> <p>1. <좌동></p> <p>2. <u>감독</u>과 각 연회 <u>연회장</u>이 협의하여 18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부 각 국 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p> <p>3. <좌동></p> <p>③ 성직위원회</p> <p>1. <좌동></p> <p>2. <u>감독</u>이 각 연회 <u>연회장</u>과 협의하여 각 연회에서 교역자 1명씩 선정하여 구성한다. <개정></p> <p>3. <좌동></p> <p>④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p> <p>1. <좌동></p> <p>2. 연회에서 선임한 20명(교역자 10명, 평신도 10명)과 <u>감독</u>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p> <p>3. <좌동></p> <p>⑤ 역사보존위원회</p> <p>1. <좌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에서 역사보존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자를 10명으로 선정하여 구성한다.</p> <p>3. 역사보존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p>	<p>2. 감독이 각 연회장과 협의하여 교역자와 평신도 중에서 역사보존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자를 10명으로 선정하여 구성한다.<개정></p> <p>3. <좌동></p> <p>⑥ 대의협력위원회 <신설></p> <p>1. 감리교회의 대외 및 국제협력관계를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p> <p>2. 대의협력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절 감 사</p> <p>【265】 제164조(감사) 본부와 기독교타임즈의 회계 및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절 감 사</p> <p>【265】 제164조(감사) 본부와 도서출판 KMC, 기독교타임즈사의 회계 및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개정></p>	
<p>【268】 제1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u>각 항</u>과 같다.</p> <p>① 연 2회 정기적으로 본부의 회계와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p> <p>② <u>감독회장이</u> 요청하면 감사한다.</p> <p>③ 감사 결과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경우에는 <u>감독회장에게</u>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u>감독회장은</u> 14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④ 감사는 감사한 결과를 총회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p> <p>⑤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를 해당 심사위원회 또는 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268】 제1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감독이 요청하면 감사한다.<개정></p> <p>③ 감사 결과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경우에는 감독에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은 14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p> <p>④ <좌동></p> <p>⑤ <좌동></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269】 제168조(재정 감사) 감리회 본부의 재정 감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u>감독회장은</u> 임기만료 3개월 전에 <u>감독회장의</u> 재임기간 중에 집행한 본부회계 전반에 대한 재정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후임자에게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p> <p>② 재정 감사 결과 재정상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퇴임 후에도 변상책임을 진다.</p>	<p>【269】 제168조(재정 감사) 감리회 본부의 재정 감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u>감독은</u> 임기만료 3개월 전에 <u>감독의</u> 재임기간 중에 집행한 본부회계 전반에 대한 재정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후임자에게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개정></p> <p>② <좌동></p> <p>③ <u>감사위원회는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u> <신설></p> <p>1. <u>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위탁할 경우는 회계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감사인은 감리회 본부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2. <u>감독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재임기간 동안의 본부회계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감독 인수인계서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3. <u>제1항과 제2항의 감사결과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 (2015. 10. 30) <신설></u></p> <p>【0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신설></p> <p>【000】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서리담당자로 파송된 교역자는 구법에 따른다.<신설></p> <p>【000】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선출된 감독회장, 감독 및 본부 각국 총무, 실장, 원장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며, 각국 총무, 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p>【000】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장정에 의하여 선임된 각 의회, 각위원회 위원, 각 이사회 이사 및 감사는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신설></p> <p>【000】 제5조(경과조치) 기독교타임즈와 관련된 법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p> <p>【000】 제6조(경과조치) 도서출판 KMC에 관련된 법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p> <p>【000】 제7조(경과조치) <신설> 제135조 (전직감독의 예우) 구법에 의하여 선출된 감독회장의 예우에 대하여는 구법의 조항을 적용한다.</p> <p>【000】 제8조(경과조치) <신설> ① 이 법 시행 당시 감리회본부 정원 6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② 이법 시행 이후 정년에 도달하거나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충원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항의 별도 정원은 줄어드는 것으로 본다. <신설></p> <p>【000】 제9조(경과조치) <신설> 제95조 ①항과 제131조 ①항의 정회원 연수 의무 규정은 2016년 선거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p>【000】 제10조(경과조치) <신설></p> <p>① 제6절 수련목회자에 관한 법은 2016년도 신학대학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신설></p> <p>② 제6절 수련목회자에 관한 법은 2016년도 이전의 신학대학원 입학생과 진급 중에 있는 자는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설></p> <p>【000】 제11조(미주특별연회 자치법 시행일) 이 법 제7장 미주특별연회 자치법 규정은 미주특별연회에서 자치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p> <p>【000】 제84조(감리사의 자격) ②항, ⑤항은 2017년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4편 의회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297】 제2조(의회의 종류) 감리회 안에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5가지 의회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편 의회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297】 제2조(의회의 종류) 감리회 안에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입법의회, 총회를 둔다. <개정></p>	<p>총회와 입법의회 분리</p>
<p>【299】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특별히 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회와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p> <p>① <u>연회, 총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교역자, 평신도를 동수로 하며 평신도 대표 중 30%는 여성 장로로 할 수 있다.</u></p> <p>② <u>각 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교역자, 평신도를 동수로 구성하며 해당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성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u></p> <p>③ 각 의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불법으로 선출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 책임자는 직권으로 원인 무효시킬 수 있다.</p> <p>④ 각 의회의 위원회나 이사회의 위원 및 이사는 자기 및 가족과 관계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나 이사회의 토론 및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p>	<p>【299】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특별히 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회와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좌동></p> <p>① <u>연회와 총회 및 각 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u> <개정></p> <p>② <u>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와 총회의 대표는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 하며, 15%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선출 한다. 다만 평신도 대표는 장로이어야 한다.</u> <개정></p> <p>③ <좌동></p> <p>④ <좌동></p>	<p>여성 15% 의무 할당 50세미만자 15% 할당</p>
<p>【300】 제5조(자치기관의 설치) 각 의회(지방회, 연회, 총회) 안에 선교, 교육, 봉사, 친교의 사업을 위하여 교회학교연합회, 청년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여성교회연합회, 남선교회연합회를 설치하되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단, 자치기관의 회장은 해당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300】 제5조(자치기관의 설치) 각 의회(지방회, 연회, 총회) 안에 선교, 교육, 봉사, 친교의 사업을 위하여 교회학교연합회, 청년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여성교회연합회, 남선교회연합회를 설치하되 감리사, 연회장, 감독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자치기관의 회장은 해당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p>	<p>감독, 감독회장→연회장 감독</p>
<p>【307】 제12조(당회 의장) 당회 의장은 개체교회 담임자가 된다. 담임자 유고시에는 감리사가 의장이 된다. 다만 <u>서리담임</u></p>	<p>【307】 제12조(당회 의장) 당회 의장은 개체교회 담임자가 된다. 담임자 유고시에는 감리사가 의장이 된다. 다만 서리담임</p>	

현행	개정안	비고
<p>자와 담임목사 직무대행은 감리사의 허락이 있을 시 당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p>	<p><u>하고 있는 수련목회자</u>와 담임목사 직무대행은 감리사의 허락이 있을 시 당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p>	
<p>【314】 제19조(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한다. 단, 입교인 정리는 정기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p> <p>② 당회는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p> <p>③ 당회는 집사, 권사를 선출한다.</p> <p>④ 당회는 감사, 교회학교장 등을 선출한다.</p> <p>⑤ 당회는 선출된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을 인준한다.</p> <p>⑥ 당회는 5세대부터 9세대 범위 안에서 속회를 조직하고 임원 중에서 속장 1명을 선출한다.</p> <p>⑦ 당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장로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되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방회에 천거한다.</p> <p>⑧ 당회는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제명을 의결한다. 다만,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p> <p>⑨ 당회는 담임자의 목회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의 천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⑩ 당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당회원에 대해 입교인 5명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복권을 의결할 수 있다.</p> <p>⑪ 당회는 당회원들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p> <p>⑫ 당회는 신천집사, 신천권사의 품행을 심사하고 과정고시를 거쳐 증서를 수여한다.</p>	<p>【314】 제19조(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p> <p><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p>⑥ <좌동></p> <p>⑦ <좌동></p> <p>⑧ <좌동></p> <p>⑨ <좌동></p> <p>⑩ <좌동></p> <p>⑪ <좌동></p> <p>⑫</p>	
	<p>【000】 제00조(사고 당회의 처리)</p>	<p>사고당회처리</p>

현행	개정안	비고
	<p>① <u>당회가 제11조(당회의 소집) 제1항이 규정한 정기당회 소집 기한을 30일 이상 경과하도록 소집되지 않을 경우 감리사는 지방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고당회로 지정한다.</u> <신설></p> <p>② <u>제1항에 의하여 사고당회로 지정된 개체교회의 당회는 감리사가 소집한다.</u>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임원회</p> <p>【000】 제00조(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다음에 따라 소집한다. <신설></p> <p>① <u>임원회는 담임자가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담임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는 위임받은 부담임자나 장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담임자가 유고나 궐위인인 경우는 감리사나 감리사가 위임한 부담임자나 장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u> <신설></p> <p>② <u>임원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되, 담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u> <신설></p>	<p>임원회 직무대행 명기</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기획위원회</p> <p>【319】 제24조(기획위원회) 개체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기획위원회</p> <p>【319】 제24조(기획위원회의 소집) 개체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획위원회를 두며, 담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시기획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p>	<p>정기획위원회 매월 의무</p>
<p>【320】 제25조(기획위원회의 조직) 기획위원회는 담임자와 연회에서 파송한 연회 회원과 장로로 조직한다. 다만, 기획위원회 위원 수가 7인 미만인 경우에는 <u>임원 중 권사, 집사의 순으로 7인에 달할 때까지 당회에서</u> 위원을 충원한다.</p>	<p>【320】 제19조(기획위원회의 조직) 기획위원회는 담임자와 연회에서 파송한 연회 회원과 장로로 조직한다. 다만, 기획위원회 위원 수가 7인 미만인 경우에는 <u>남선교회회장대표, 여선교회회장대표, 청장년선교회회장대표,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예배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순으로</u> 선출하며, 나머지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p>	<p>각 선교회장 및 부장 우선 선출하고, 추가 인원은 임원회에서 선출</p>

현행	개정안	비고
<p>【321】 제26조(기획위원회의 직무) 기획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협의</p> <p>② 담임자의 목회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p> <p>③ 신천장로 천거</p> <p>④ 권사, 집사, 기타 임원의 당회 천거</p> <p>⑤ 상근 직원의 임면에 관한 협의</p> <p>⑥ 그 밖의 중요사항에 관한 협의</p>	<p>【321】 제26조(기획위원회의 직무) 기획위원회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p> <p>①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u>결의</u> <개정></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상근 직원의 임면에 관한 <u>결의</u> <개정></p> <p>⑥ <좌동></p>	<p>일부 결의권 부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구역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구역회</p> <p>【324】 제29조(구역회의 구분 및 소집) 구역회는 정기구역회와 임시구역회로 구분한다.</p> <p>① 정기구역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중에 감리사가 소집한다.</p> <p>② 구역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감리사가 소집한다.</p> <p>③ 구역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감리사가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u>1주일</u>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구역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구역회</p> <p>【324】 제29조(구역회의 구분 및 소집) 구역회는 정기구역회와 임시구역회로 구분한다.</p> <p>① <좌동></p> <p>② <u>임시구역회는 담임자 또는</u> 구역회원 3분의 1 이상의 <u>청원</u>이 있을 때 감리사가 소집한다. <개정></p> <p>③ 구역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감리사가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u>7 일 전까지</u>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u>구역회를 서면으로 요청하여도 감리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소집하지 않을 경우 담임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연회 연회장이 소집하고 일시와 장소는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7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u> <신설></p>	<p>구역회 14일내 의무소집</p>
<p>【325】 제30조(구역회의 조직) 구역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목사, <u>전도사</u>, 교육사, 심방전도사</p>	<p>【325】 제30조(구역회의 조직) 구역회의 회원은 <u>다음과</u> 같다. <개정></p> <p>① 목사, <u>수련목회자, 서리담임자</u>, 교육사, 심방전도사 <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② 장로, 권사, 속장 ③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④ 남선교회 회장대표, 여선교회 회장대표, 청장년선교회 회장대표, 청년회 회장대표, 교회학교 교장, 당회 서기, 감사 ⑤ 구역에 소속한 교역자 연회 회원	② <좌동> ③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u>예배부장</u> ,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개정> ④ <좌동> ⑤ <좌동>	
<p>【326】 제31조(구역회 의장) <u>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다만,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 감리사 유고 시에는 소속 연회 감독이 구역회를 주재할 수 있다.</u></p>	<p>【326】 제31조(구역회 의장) ① <u>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다만,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u> <개정> ② <u>감리사 유고 시, 또는 제 29 조 4항의 경우에는 연회장이 의장이 된다.</u> <개정> ③ <u>이 법 제33조 6항에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구역회는 위임할 수 없다.</u> <신설></p>	부동산 매매 위임금지
<p>【328】 제33조(구역회의 직무) 구역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① 구역회는 담임자와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② 구역회는 구역 안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③ 구역회는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을 보고받고 신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각종 부담금과 그 밖의 현금의 수지된 것을 사문한다. ④ 구역회는 구역회원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지방회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⑤ <u>구역회는 교인 및 사역자와 임원(목사, 전도사, 장로 제외)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해 담임자의 추천으로 심사위원 3명과 재판위원 5명을 감리사가 임명한다. 다만, 구역회가 닫힌 후에는 담임자가 기획위원회와 협의하</u>	<p>【328】 제33조(구역회의 직무) 구역회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p>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삭제>	⑤ 구역재판위원회->연회이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여 감리사에게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한다.</p> <p>⑥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구역회는 교회에 기증된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 처리한다.</p> <p>⑧ 구역회는 교역자의 이·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와 은급, 안식년(매 7년마다)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한다.</p> <p>⑨ 구역회는 교회 및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p> <p>⑩ 구역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구역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구역회라 하며, 사고구역회는 감리사가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처리한다.</p>	<p>⑥</p> <p>⑦ <좌동></p> <p>⑧ <좌동></p> <p>⑨ <좌동></p> <p>⑩ <좌동></p>	
<p>[329] 제34조(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 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p> <p>① 개회예배</p> <p>② 서기선택</p> <p>③ 회원점명</p> <p>④ 보고접수(서식대로 지면으로)</p> <p>1. 목사</p> <p>2. 전도사</p> <p>3. 교육사</p> <p>4. 심방전도사</p> <p>5. 장로</p> <p>6. 권사</p>	<p>[329] 제34조(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 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1. <좌동></p> <p>2. <좌동></p> <p>3. <좌동></p> <p>4. <좌동></p> <p>5. <좌동></p> <p>6. <좌동></p>	

현행	개정안	비고
7. 속장 8. 선교부장 9. 교육부장 10. 사회봉사부장 11. 문화부장 12. 재무부장 13. 관리부장 14. 남선교회 회장 15. 여선교회 회장 16. 청장년선교회 회장 17. 청년회 회장 18. 교회학교 교장 19. 당회 서기 ⑤ 지방회 대표 선출 ⑥ 예배당과 주택에 관한 사무처리 ⑦ 구입, 매매, 임대차 또는 기증한 동산과 부동산의 사무처리 ⑧ 감사보고 ⑨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과 부담금 사문 ⑩ 신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 의결 ⑪ 그 밖의 사무처리 ⑫ 폐회	7. <좌동> 8. <좌동> 9. <좌동> 10. <좌동> 11. 예배부장 <신설> 12. <좌동> 13. <좌동> 14. <좌동> 15. <좌동> 16. <좌동> 17. <좌동> 18. <좌동> 19. <좌동> 20.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⑨ <좌동> ⑩ <좌동> ⑪ <좌동> ⑫ <좌동>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구역 인사위원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구역 인사위원회</p>	

현행	개정안	비고
<p>【334】 제39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구역 인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기명날인하여 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감리사에게 제출한 경우 감리사는 구역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서에는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대상 교역자의 성명, 생년월일,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③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를 받은 감리사는 2주일 이내에 구역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소집 통보서가 구역 인사위원 전원에게 1주일 이전에 도착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감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이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집한다.</p> <p>④ 부담임목사와 수련목회자의 인사 처리를 위한 구역 인사위원회는 감리사의 위임을 받아 담임목사가 소집 처리할 수 있다.</p> <p>⑤ 인사이동에 대한 해당 교역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교역자의 도덕적 과실이나 목회에 실패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교역자의 이동은 억제되어야 한다.</p> <p>⑥ 독립 구역이 아닌 교회담임자의 인사처리는 해당 교회 임원들과 협의하여 감리사가 처리한다.</p> <p>⑦ 교역자가 구역 인사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동할 경우 해당 연회 감독은 모든 직임과 권리를 정지시키고 구역 인사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지방 감리사는 즉시 고발한다. 단, 재판비용은 해당 연회에서 부담한다.</p>	<p>【334】 제39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u>다음과</u> 같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부담임자와 수련목회자의 인사 처리 <u>및 기관 파송 교역자의 소속에 관한</u> 구역인사위원회는 감리사의 위임을 받아 담임목사가 소집 처리할 수 있다. <개정></p> <p>⑤ 좌동</p> <p>⑥ 좌동</p> <p>⑦ 좌동</p>	<p>④ 기관파송자 구역인사처리</p>
<p>【335】 제40조(인사처리절차)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p>	<p>【335】 제40조(인사처리절차)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①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의결한다.</p> <p>② 인사처리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이 직권으로 파송한다.</p> <p>③ 부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p>	<p>① <좌동></p> <p>② 인사처리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u>연회장이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36조(담임자의 파송) 4항에 따라</u> 파송한다. <개정></p> <p>③ 부담임자와 <u>기관 파송교역자의</u>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지방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지방회</p> <p>【338】 제43조(지방회의 조직) 지방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조직한다.</p> <p>① 해당 지방에 소속한 연회 회원(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인 교역자</p> <p>② 지방교회에 파송 받은 장로</p> <p>③ <u>서리담임자, 전도사(수련목회자, 군목 및 선교사 후보)</u></p> <p>④ 각 구역 권사 대표, 선교부 대표, 교육부 대표, 사회봉사부 대표, 문화부 대표, 재무부 대표, 관리부 대표, 남선교회 대표, 여선교회 대표, 청장년선교회 대표, 청년회 대표, 교회학교 대표 각 1명</p> <p>⑤ 남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지방연합회 회장, 청년회지방연합회 회장</p> <p>⑥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지방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지방회</p> <p>【338】 제43조(지방회의 조직) 지방회는 <u>다음의</u> 회원으로 조직한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수련목회자(서리담임자, 군종사관후보생 및 수련선교사)<개정></p> <p>④ 각 구역 권사 대표, 선교부 대표, 교육부 대표, 사회봉사부 대표, 예배부대표, 문화부 대표, 재무부 대표, 관리부 대표, 남선교회 대표, 여선교회 대표, 청장년선교회 대표, 청년회 대표, 교회학교 대표 각 1명 <개정></p> <p>⑤ <삭제></p> <p>⑤ <u>교회경제법에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u>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개정></p>	<p>④항,⑤항→통합</p>

현행	개정안	비고
<p>⑦ 각 구역은 5명 이상의 대표를 지방회에 보낸다.</p>	<p>⑥ ⑦항과 <좌동> ⑦ <u>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u> <신설></p>	
<p>【339】 제44조(지방회의 소집) 지방회는 감리사가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p> <p>① 매년 1~2월 중에 소집한다.</p> <p>② 지방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리사가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다.</p>	<p>【339】 제44조(지방회의 구분 및 소집) 지방회는 감리사가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p> <p>① <u>정기지방회는</u> 매년 1~2월 중에 소집한다. <개정> ② <좌동> ③ <u>임시지방회는 필요시에 지방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감리사가 소집한다.</u> <신설> ④ <u>감리사가 유고나 결위일 때는 연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u> <신설> ⑤ <u>지방회 소집권자는 지방회가 개최되기 14일 전에 지방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개체교회의 지면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u> <신설></p>	<p>③ 임시지방회 명기 ⑤ 지방회 공시</p>
<p>【340】 제45조(지방회 의장) 지방회 의장은 해당 지방 감리사가 된다.</p> <p>① 지방 감리사가 유고일 때는 교역자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p> <p>② 감리사가 유고일 때에는 감독이 지방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340】 제45조(지방회 의장) 지방회 의장은 해당 지방회 감리사가 된다.</p> <p>① <u>감리사가 유고일 때는 교역자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u> <개정> ② 감리사가 <u>결위일</u> 때에는 <u>연회장이</u> 지방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344】 제49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진급과정 중에 있는 장로를 심사하고 장로로 안수하며 신천장로, 복권되는 장로, 이명장로를 파송한다.</p>	<p>【344】 제49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p> <p>① <u>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86조(감리사 선출과 임명)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사 선거를 실시한다</u> <신설> ② ①항과 <좌동></p>	<p>①항→②항</p>

현행	개정안	비고
<p>1. 당회에서 천거한 신천고시과정 장로와 진급과정 중에 있는 장로에 대한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이는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 임명을 의결한 후 장로증서를 준다.</p> <p>2. 모든 과정을 마친 장로는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을 통과한 후 장로안수를 한다.</p> <p>② 연회 준회원 후보, 연회 재허입을 원하는 이, 그리고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온 교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회 회원 허입을 연회에 청원한다.</p> <p>③ 각부 총무, 실행부위원, 인사위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을 선출한다.</p> <p>④ 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되지 아니한 구역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p> <p>⑤ 지방 실행부위원회 위원과 개체교회 담임자로 공천위원회를 구성한다.</p> <p>⑥ 지방회는 회원 간의 고소·고발 사건을 심사하고 재판하기 위해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재판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을 선출한다.</p> <p>⑦ 각 교회별 재정 현황을 조사하고 부담금을 배정한다.</p> <p>⑧ 지방 안의 교회당, 주택, 임대차, 물품 등 교회자산을 조사하고 그 자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의 여부를 조사한다.</p> <p>⑨ 구역회 회의록을 조사한다.</p> <p>⑩ 지방에 소속한 교역자의 사역보고를 받는다. 미자립교회 담임자는 지방회에 교회현황을 문서(별도양식 참조)로 매년 보고한다.</p>	<p>③ ②항과 <좌동></p> <p>④ ③항과 <좌동></p> <p>⑤ ④항과 <좌동></p> <p>⑥ ⑤항과 <좌동></p> <p>⑦ <u>지방회는 심사와 재판 위원으로 가급적 해당분야에 경험이 있는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을 선출하여 연회에 추천한다.</u> <개정></p> <p>⑧ ⑦항과 <좌동></p> <p>⑨ ⑧항과 <좌동></p> <p>⑩ ⑨항과 <좌동></p> <p>⑪ ⑩항과 <좌동></p>	<p>⑥항→⑦항</p>

현행	개정안	비고
<p>⑪ 전도사, 지방회 평신도 회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재판이 필요할 때 이를 재판위원회에 회부한다.</p> <p>⑫ 지방이 분할을 원하는 경우 연회 및 지방 경계법에 따라 분할 사유, 분할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지방회 의결을 통해 지방분할 건의안을 연회에 제출한다. 다만, 지방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분할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임명된 년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년수에 따라 선출하되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 연회 남·여·청장년선교회·청년회·교회학교연합회장 및 지방 여선교회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의 임명된 년수에 상관없이 여성 장로로 할 수 있다. 2. 연회 평신도 대표는 해당 지방회에 소속한 현직 정회원 수와 동수로 한다. 3. 평신도 대표의 선출은 각 구역별 정회원 수와 교인 수를 참작하여 선출하되 그 선출 절차 일체를 평신도들이 자치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p>⑭ 지방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지방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지방회라 하며, 사고지방회는 감독이 처리한다.</p>	<p>⑪ <삭제></p> <p>⑫ <좌동></p> <p>⑬ <좌동></p> <p>⑭ <좌동></p> <p>⑮ <u>감리사의 유고나 궐위시 그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대행이 30일 이내에 임시지방회를 소집하여 후임 감리사를 선출하며 보선된 감리사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2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신설></p>	<p>⑪ 지방재판위원회 폐지</p> <p>⑮ 임기 반이하인 경우 직무대행이 감리사 잔여임기 업무 처리</p>

현행	개정안	비고
	<p>【000】 제00조(사고 지방회의 처리)</p> <p>① 지방회가 정지지방회 소집 기한을 30일 이상 경과하도록 소집되지 않을 경우 연회장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고지방회로 지정한다. <신설></p> <p>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사고지방회는 연회장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소집한다. <신설></p> <p>③ 연회장이 제2항에 따라 당해 지방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신설></p>	<p>사고지방회 처리방안 신설</p>
<p>【347】 제52조(지방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 지방회에 설치하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전도사, 장로과정고시위원회 : 전도사와 장로의 과정고시를 주관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총회에서 제정한 과정고시령에 준하여 과정고시를 실시한다.</p> <p>② 전도사, 장로자격심사위원회 : 전도사, 장로 및 연회 준회원에 허입할 이의 품행과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지방 심사위원회에 제소한다.</p> <p>③ 선교사업위원회 : 감리회 본부의 선교정책과 연회의 선교방침에 따라 지방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선교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p> <p>④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 감리회 본부의 기독교교육정책과 연회의 기독교교육방침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진하는 기독교교육사업 및 문화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p> <p>⑤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사업 정책</p>	<p>【347】 제52조(지방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 지방회에 설치하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과 연회의 사회평신도사업 방침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진하는 평신도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p> <p>⑥ 재정위원회 : 개체교회 재정운영 실태 조사와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 검토한다.</p> <p>⑦ 교회관리분과위원회 : 개체교회의 건물, 임대차, 비품,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었는지의 여부와 구역회 회의록을 조사, 보고한다.</p> <p>⑧ <u>심사위원회</u> : 지방회에 제출된 <u>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여 지방 재판위원회에 재판을 청구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u></p> <p>⑨ <u>재판위원회</u> : <u>심사위원회에서 청구한 고소·고발 사건을 재판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u></p> <p>⑩ 건의안심사위원회 : 지방회에 제출된 건의안을 검토하여 지방회에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동수의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p> <p>⑪ 투표위원회 : 지방회 개회 중에 실시하는 각종 투표업무를 분담한다.</p>	<p>⑥ <좌동></p> <p>⑦ <좌동></p> <p>⑧ <삭제></p> <p>⑨ <삭제></p> <p>⑧ ⑩ 항과 <좌동></p> <p>⑨ ⑪ 항과 <좌동></p>	<p>⑧, ⑨ 심사 및 재판위원회 연회이관으로 폐지</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지방 실행부위원회</p> <p>【350】 제55조(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지방회가 단힌 후에 지방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 실행부위원회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u>지방회</u> 실행부위원회 <개정></p> <p>【350】 제55조(<u>지방회</u> 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지방회가 단힌 후에 지방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u>지방회</u> 실행부위원회를 둔다. <개정></p>	<p>지방→지방회</p>
<p>【351】 제56조(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u>지방 실행부위원회</u>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p> <p>① <u>지방</u> 감리사, 서기 및 회계</p> <p>② 각부 총무</p>	<p>【351】 제56조(<u>지방회</u>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p> <p>① 감리사, 서기 및 회계 <개정></p> <p>② <좌동></p>	<p>지방→지방회</p>

현행	개정안	비고
<p>③ 정회원 대표 3명, 평신도 대표 3명</p> <p>④ 남선교회·여선교회·청장년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p> <p>⑤ 감사와 <u>교회학교지방연합회</u> 회장은 직권상 지방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보유한다.</p>	<p>③ <좌동></p> <p>④ 남선교회·여선교회·청장년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u>교회학교지방연합회 회장</u> <개정></p> <p>⑤ 감사는 직권상 <u>지방회</u>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보유한다. <개정></p>	<p>⑤ ‘교회학교지방연합회 회장’ → ④ 로 이동</p>
<p>【356】 제61조(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지방회 및 연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심의</p> <p>② 지방회의 주요 사업계획의 심의 및 평가 분석</p> <p>③ 지방회 예산안 및 결산 예비 심사</p> <p>④ 지방회 및 연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p> <p>⑤ 지방 내 교회의 행정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 또는 민사, 형사상의 분쟁 사건에 대하여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에 이를 조정하여 화해를 도모한다.(사안의 경중에 따라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한다.)</p> <p>⑥ 개척교회 설립에 대한 심의와 인준 : 개척교회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할 수 없는 임대차 건물인 경우 감리사와 담임자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⑦ 지방회가 단행 후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의 심의</p> <p>⑧ 그 밖의 지방회 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p>	<p>【356】 제61조(<u>지방회</u>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p>⑥ <좌동></p> <p>⑦ <좌동></p> <p>⑧ <좌동></p> <p>⑨ <u>감리사가 유고나 궐위시 또는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거나,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직전 감리사가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리사를 역임한 이 중에서 감리사 직무대</u></p>	<p>⑨ 직무대행 선출방법</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u>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하여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당선자를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리사 직무대행은 지방회 및 지방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리사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지방 인사위원회</p> <p>【357】 제62조(지방 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 인사위원회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지방회인사위원회 <개정></p> <p>【357】 제62조(<u>지방회 인사위원회</u>의 설치) 지방회 안에 <u>지방회 인사위원회</u>를 둔다. <개정></p>	<p>‘지방’→‘지방회’</p>
<p>【358】 제63조(<u>지방 인사위원회</u>의 조직) 지방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p> <p>① 감리사</p> <p>② 교역자 대표 4명, 평신도 대표 4명</p>	<p>【358】 제63조(<u>지방회 인사위원회</u>의 조직) <u>지방회 인사위원회</u>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p>‘지방’→‘지방회’</p>
<p>【363】 제68조(지방 인사위원회의 직무) 지방 인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장로와 <u>서리전도사</u>(담임전도사, 수련목회자, 선교사, 군목후보자)의 인사문제</p> <p>② <u>교역자와 평신도 간의 인화와 친교의 도모</u></p>	<p>【363】 제68조(<u>지방회 인사위원회</u>의 직무) <u>지방회 인사위원회</u>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p> <p>① 장로와 전도사(<u>서리담임자</u>, 수련목회자, <u>수련선교사</u>, <u>군중사 관후보생</u>)의 인사문제 <개정></p> <p>② <삭제></p> <p>② <u>감리사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한다.</u> <개정></p>	<p>‘지방’→‘지방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절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p> <p>【372】 제77조(직무)</p> <p>①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지방 내의 인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며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p> <p>② 불성실한 교역자란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절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p> <p>【372】 제77조(직무)</p> <p>① <좌동></p> <p>② <좌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는 이로 아래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오락 및 도박에 빠진 이 2. 불경건한 생활을 하는 이 3. 이중 직업을 가진 이 4.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 5.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이 6. 이단집단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단사상에 빠진 이 7.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이 <p>③ 조사한 결과 사안에 따라 시정 경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의 회부, 연회 심사위원회에의 고소 또는 연회 감독에게 직권으로 직임정지를 요청한다.</p> <p>④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항은 총회 성직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p> <p>⑤ 모든 조사, 처리 비용은 해당 의회에서 부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동> 2. <좌동> 3. 이중 직업을 가진 <u>사람. 다만 미자립교회의 담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개정> 4. <좌동> 5. <좌동> 6. <좌동> 7. <좌동>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p>⑥ <u>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해 미자립교회 담임자가 이중직업을 가지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연회 연회장에게 미리 직종과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u> <신설></p>	<p>3. 미자립교회 이중직 제한적 허용 6항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미주특별연회</p> <p>【376】 제81조(미주특별연회 의회조직) 미주특별연회의 의회조직과 직무는 당회로부터 연회까지는 <u>의회법</u>에 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미주특별연회</p> <p>【376】 제81조(미주특별연회 의회조직) 미주특별연회의 의회조직과 직무는 미주특별연회 <u>자치법</u>에 의한다. <개정></p>	
<p>【377】 제82조(미주특별연회 직무) 미주특별연회의 직무는 연</p>	<p>【377】 제82조(미주특별연회 직무) 미주특별연회의 직무는 <u>미주</u></p>	

현행	개정안	비고
<p>회직무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p> <p>① 미주특별연회는 연회 안의 교회와 기관들의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보존을 위하여 미국 국내법에 의한 유지재단을 별도로 설립하여 유지재단 이사를 자체적으로 선출하여 시무하게 한다.</p> <p>② 미주특별연회에 소속한 연회원의 은급운영을 위하여 미국 국내법에 의한 은급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이는 2009년 1월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은급은 중전의 법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다.</p> <p>③ 미주특별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 이외의 총회 및 본부의 이사나 위원을 파송하지 아니한다.</p> <p>④ <u>미주특별연회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연회 운영내규를 별도로 제정하여 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u></p> <p>⑤ <u>미주특별연회의 유지재단 정관과 은급재단 정관의 제정과 개정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입법의회가 닫혀 있는 동안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u></p>	<p><u>특별연회 자치법에 준하되</u>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개정></p> <p>① <삭제></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삭제></p> <p>⑤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연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연회</p> <p>【378】 제83조(연회) 행정구역, 교회분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회 및 지방 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에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u>미주특별연회</u>, 호남선교연회, 서부선교연회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연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연회</p> <p>【378】 제83조(연회) 행정구역, 교회분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에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호남선교연회, 서부선교연회를 둔다. <개정></p>	<p>‘미주특별연회’ 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p>【379】 제84조(연회의 조직)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 지방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p> <p>①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p>	<p>【379】 제84조(연회의 조직)</p> <p>①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개정></p> <p>②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신설></p> <p>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담임자나 소속교역자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신설></p>	<p>‘항’으로 분리해서 신설</p>
<p>【382】 제87조(연회의 소집) 연회는 매년 1회, 4월 또는 5월 중에 감독이 소집한다.</p>	<p>【382】 제87조(연회의 소집) 연회는 다음과 같이 <u>연회장이</u> 소집한다.<개정></p> <p>① <u>정기연회는 매년, 4월 또는 5월 중에 연회장이 소집한다</u> <개정></p> <p>② <u>임시연회는 필요시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연회장이 소집한다.</u> <신설></p>	<p>감독→연회장</p>
<p>【383】 제88조(연회의 일시 및 장소의 결정) 연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독이 정한다.</p>	<p>【383】 제88조(연회의 일시 및 장소의 결정) 연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u>연회장이</u> 정한다.</p>	<p>‘감독’→‘연회장’</p>
<p>【386】 제91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연회는 임기 2년의 감사 2명을 선출하여 연회 본부의 회계 및 행정사무를 감사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p> <p>② 연회는 임기 2년의 과정고시위원을 두고 준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과정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p> <p>③ 연회는 임기 2년의 자격심사위원을 두고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품행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연회</p>	<p>【386】 제91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회원 허입, 재허입, 휴직, 퇴직, 면직, 은퇴 등의 사항을 결정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고하게 2년 간 계속하여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연회 회원에게는 감독이 정직을 명한다. 2. 2년 간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미과 중에 있는 교역자에게는 감독이 휴직을 명한다. 3.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였던 연회 회원이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파송을 청원하면 감독에게 해당 교역자를 파송하도록 요청한다. 4. 감리회의 교리나 기독교의 정통적 교리를 부인하고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5. 교역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p>④ 연회는 과정보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에 허입과 재허입은 개인별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회원과 진급 중에 있는 준회원은 일괄적으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품행을 통과한다.</p> <p>⑤ 연회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사안을 조정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 사건을 조정 중재하기 위해 행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가 정하여 연회 실행부위원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p> <p>⑥ 연회는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한 후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p> <p>⑦ 연회는 연회원 교역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장로와 전</p>	<p>④ <좌동></p> <p>⑤ <좌동></p> <p>⑥ <좌동></p> <p>⑦ <좌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도사에 대한 상소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재판위원 12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⑧ 연회 행정재판위원은 12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 법전문인 1명)으로 구성하되 감독이 지명하는 2명을 포함하여 7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⑨ 연회는 연회 소관의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평신도사업이 감리회 본부 정책에 따라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 검토한다.</p> <p>⑩ 연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관이사 및 위원을 파송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이사 각 1명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그 연회 감독이 이사로 파송된 대학교에는 이사를 파송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회에서 파송한 이사를 거부하는 신학대학교의 출신자는 감리회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지 아니한다. 2. 연회는 감리회에서 설립하였거나 토지, 건물, 재정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감리회와 직접적인 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교육기관 제외)을 관리하고 이사 또는 위원을 선출 파송한다. <p>⑪ 연회는 연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하며 각 연회 서기는 총회에 참석할 대표들의 성명, 신급, 연령, 주소를 순서대로 기록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p> <p>⑫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회 본부 각 국·원 위원 및 재단이사과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여</p>	<p>⑧ <u>연회는 제7편 재판법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천된 인원 중 심사와 재판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선교연회는 추천된 인원이 부족할 경우 관리자가 부족인원을 추천한다. <개정></u></p> <p>⑨ <좌동></p> <p>⑩ <좌동></p> <p>⑪ <좌동></p> <p>⑫ <좌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과송한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 각 국·원 위원, 재단이사 등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각 국·원 위원으로 <u>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u>을 선출한다. 2. 연회는 감리회 유지재단의 이사로 <u>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u>을 선출한다. 3. 연회는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u>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u>을 선출한다. 4. 연회는 교역자은급재단의 이사로 <u>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u>을 선출한다. 5. 연회는 <u>사회복지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u>을 선출한다. 6. 연회는 장학재단의 이사 1명을 <u>교역자나 평신도</u> 중에서 선출한다. 7. 연회는 감독회장과 감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u>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u>을 선출한다. 8. <u>연회는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u>을 선출한다. 9. 연회는 총회 공천위원으로 <u>2명(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u>을 선출하여 명단을 감독회장에게 보고한다. 10. 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으로 총회 대표 중에서 <u>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u>을 선출한다. 11. 연회는 주간 「기독교타임즈」 이사로 <u>교역자 대표 1명과 평신도 대표 1명</u>을 선출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각 국·원 위원으로 <u>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u>을 선출한다.<개정> 2. 연회는 감리회 유지재단의 이사로 <u>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u>을 선출한다.<개정> 3. 연회는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u>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u>을 선출한다.<개정> 4. 연회는 교역자은급재단의 이사로 <u>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u>을 선출한다.<개정> 5. 연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과 <u>기독교대한감리회대화복지재단의 이사로 1명</u>을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 중에서 <u>윤번제</u>로 선출한다. <u>다만 호남선교연회는 제외한다.</u> <개정> 6. <좌동> 7. 연회는 <u>감독·연회장</u> 선거관리위원으로 <u>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u>을 선출한다 <개정> 8. <삭제> 8. 연회는 총회 공천위원으로 <u>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u>을 선출하고 명단을 <u>감독</u>에게 보고한다.<개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12. 연회는 총회 행정조정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p> <p>13. 연회는 총회 심사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p> <p>14. <u>연회는 총회 특별심사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u></p> <p>15. <u>연회는 총회 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u></p> <p>16. <u>연회는 총회 특별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u></p> <p>17. <u>연회는 총회 행정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u></p> <p>18. 연회는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으로 2명(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p> <p>19. 연회는 연수원 운영위원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p> <p>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p> <p>⑭ 연회는 다음과 같이 연회 안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처리한다.</p> <p>1. 개체교회 예배당, 주택, 임대차와 기타 부대시설이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p>	<p>9. 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으로 총회 대표 중에서 <u>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을 선출한다.<개정></u></p> <p>10. 연회는 주간 「기독교타임즈」 이사로 <u>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을 선출한다.<개정></u></p> <p>12. <삭제></p> <p>11. 13호와 <좌동></p> <p>14. <삭제></p> <p>15. <삭제></p> <p>16. <삭제></p> <p>17. <삭제></p> <p>12. 18호와 <좌동></p> <p>13. 19호와 <좌동></p> <p>14. 연회는 도서출판 KMC 이사로 <u>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을 선출한다.<개정></u></p>	<p>12, 14-17까지 지방에서 추천으로 연회실행부위원회 직무로 이관</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2.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登記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의 연회 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을 일절 부여하지 아니한다.</p> <p>3. 연회는 교회사업을 위하여 기부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p> <p>⑮ 연회는 제3편 제4장 제86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의 규정에 따라 감리사를 선출하고 감리사의 이·취임식을 거행한다.</p> <p>⑯ 연회는 지방 감리사와 이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 지방회별로 선출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평신도 실행부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⑰ 은퇴한 회원(자원은퇴 포함)은 감리회의 공직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각 국·원 위원, 각 재단이사, 각 위원회 위원, 연합기관 파송 이사 및 위원은 은퇴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p> <p>⑱ 연회는 제9편 연회 및 지방 경계법에 규정된 분할 요건을 갖추면 연회분할 건의안을 채택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개체교회가 200개소 이상이 되면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선교연회에는 관리자를 둔다.</p> <p>⑲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감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p> <p>⑳ 총회의 모든 선출직 위원과 이사는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당연직과 평신도단체의 선출직 대표와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은 예외로 한다.</p> <p>㉑ <u>미주특별연회의 직무는 연회의 직무에 준하되 총회 실행부위원 외에 본부에 파송하는 각종 위원과 이사를 파송할 수 없다.</u></p> <p>㉒ 연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연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연회라 하며, 사고연</p>	<p>⑬ 연회는 <u>교역자특별조사위원</u>으로 교역자 대표 3명, 평신도 대표 3명, <u>연회장</u>이 지명하는 1명을 선출한다. <개정></p> <p>⑭ <좌동></p> <p>⑮ <좌동></p> <p>⑯ <좌동></p> <p>⑰ <좌동></p> <p>⑱ <좌동></p>	<p>㉒->㉑ 로 이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p>	<p>㉓ 총회의 모든 선출직 위원과 이사는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당연직과 평신도단체의 선출직 대표와 감독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p> <p>㉔ <삭제></p> <p>㉕ 연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연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연회라 하며, 사고연회는 감독이 처리한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연회 분과위원회</p> <p>【388】 제93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연회 분과위원회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p> <p>① 과정고시위원회 : 연회 협동회원, 준회원, 정회원으로 허입하거나 재허입하고자 하는 교역자에 대하여 고시 과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회에 보고한다. 과정고시위원회는 교역자들로 구성한다.</p> <p>② 자격심사위원회 : 준회원, 협동회원의 자격과 진급 그리고 정회원의 자격과 품행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자격심사위원회는 교역자들로 구성한다.</p> <p>③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 본부의 선교정책에 따라 연회의 선교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p> <p>④ <u>교육사업위원회</u> : 본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연회의 교육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p> <p>⑤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 본부의 사회평신도사업정책에 따라 사회평신도 활동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연회 분과위원회</p> <p>【388】 제93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연회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 본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연회의 교육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개정></p> <p>⑤ <좌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⑥ 재정위원회 : 연회의 재정 조성과 그 집행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연회 재정의 집행과 운영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한다.</p> <p>⑦ 지방회의록조사위원회 : 각 지방의 회의록 작성과 보존 상황을 조사한다.</p> <p>⑧ 연회회의록검사위원회 : 연회 회의록의 작성 내용을 검사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보존하게 한다.</p> <p>⑨ 건의안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한 건의안을 심사하여 이를 연회에 상정한다. 다만, 건의안이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거나 연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p> <p>⑩ 지방분할경제조정위원회 : 지방회에서 상정한 지방분할 건의안을 심의하여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p> <p>⑪ <u>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사건과 지방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교역자 5명과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하고 1회 심사위원은 5명으로 한다.</u></p> <p>⑫ <u>재판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사건과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고소·고발사건을 재판한다. 위원회는 교역자 5명과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구성한다.</u></p> <p>⑬ <u>장정유권해석위원회 : 연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 등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위원회는 교역자, 평신도 동수로 하되 20명 이내로 구성한다.</u></p> <p>⑭ <u>행정재판위원회 : 연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한 2명(교역자 1명, 법전문인 1명)으로 조직한다.</u></p> <p>⑮ 투표위원회 : 연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투표시에 회원 수 및</p>	<p>⑥ <좌동></p> <p>⑦ <좌동></p> <p>⑧ <좌동></p> <p>⑨ <좌동></p> <p>⑩ <좌동></p> <p>⑪ <u>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와 고발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회에서 추천 받은 위원 중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2개반을 조직한다. <개정></u></p> <p>⑫ <u>재판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와 고발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방회에서 추천 받은 위원 중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재판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2개반을 조직한다. <개정></u></p> <p>⑬ <삭제></p> <p>⑭ <삭제></p> <p>⑮ <좌동></p>	<p>⑪, ⑫ 심사와 재판을 위해 지방에서 추천된 인사를 추천하여 조직</p> <p>⑬, ⑭ 장정유권이나 행정재판도 재판위원회가 담당하여 폐지.</p>

현행	개정안	비고
<p>의결 정족수를 파악하고 공정하게 투표가 되도록 투표업무를 담당한다.</p> <p>⑩ 운영위원회 : 연회 회기 중 연회업무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p> <p>⑪ 과정고시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u>장정유권해석위원회</u>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위원회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⑩ <좌동></p> <p>⑪ 과정고시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위원회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p>	<p>⑪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연회 실행부위원회</p> <p>【393】 제98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p> <p>① 감독은 당연직 의장이 된다.</p> <p>② 각 지방 감리사와 이와 동수의 각 지방 평신도 대표</p> <p>③ 연회 정서기 1명.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회 서기를 겸한다.</p> <p>④ 연회 사업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만 보유한다.</p> <p>⑤ 연회 총무와 감사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p> <p>⑥ 연회 남선교회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 회장, 청년회연합회 회장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연회 실행부위원회</p> <p>【393】 제98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p> <p>① <u>연회실행부위원회는 연회장, 연회서기, 감리사, 지방회별로 선출한 평신도 각1명,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위원장,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위원장,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위원장, 과정고시위원회 위원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남선교회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연합회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연합회 회장, 청년회연합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연합회연합회 회장으로 조직한다.</u> <개정></p> <p>② <u>연회장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u> <개정></p> <p>③ <u>연회서기는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서기를 겸임한다.</u> <개정></p> <p>④ <u>연회 총무와 연회 감사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발언권만 보유한다.</u> (개정)</p> <p>⑤ <삭제></p> <p>⑥ <삭제></p>	<p>①, ⑥항내용 통합변경 ①-> ②항으로 이동</p> <p>②-> ③항으로 이동 ③-> ④항으로 이동</p> <p>⑤-> ④항으로 이동</p> <p>⑥-> ①항으로 통합</p>

현행	개정안	비고
	<p>【000】 제00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소집)</p> <p>① <u>연회실행부위원회는 연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한다.</u> <신설></p> <p>② <u>연회장은 연회실행부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14일 이내에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연회장이 소집을 기피할 경우 감리사 중 연급순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신설></p>	<p>연회실행부 소집 절차</p>
<p>【394】 제99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연회 또는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예비심사</p> <p>②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심의,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의 심의 확정</p> <p>③ 연회에서 실시할 주요 사업의 심의와 이의 집행</p> <p>④ 연회 및 지방 사업실적의 평가 분석</p> <p>⑤ 연회 및 지방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장·단기 계획수립</p> <p>⑥ 연회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집행</p> <p>⑦ 연회가 닫힌 후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처리</p> <p>⑧ 연회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공천</p> <p>⑨ 감독이 천거한 연회 총무의 인준</p> <p>⑩ 연회 각 협동총무의 선출</p> <p>⑪ <u>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감독 직무대행은 연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u></p>	<p>【394】 제99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p>⑥ <좌동></p> <p>⑦ <좌동></p> <p>⑧ <좌동></p> <p>⑨ <좌동></p> <p>⑩ <좌동></p> <p>⑪ <u>연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또는 연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장(전직 연회 감독 포함)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u></p>	<p>⑪ 직무대행 선출 절차</p>

현행	개정안	비고
<p>한 감독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⑫ 감독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p>	<p><u>표로 연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연회장 직무대행은 연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연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u></p> <p>⑫ <삭제></p> <p>⑫ 총회에 파견할 심사 및 재판위원과 연회 심사 및 재판위원을 지방회에 추천받아 추천으로 선출한다.<신설></p>	<p>⑫ 선거법으로 이동</p>
	<p>제 00 절 <u>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u> <신설></p> <p>【000】 제1조(설치) 연회 안에 <u>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u>를 둔다.<신설></p> <p>【000】 제2조(조직) 위원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신설)</p> <p>① <u>교역자 대표 3명</u><신설></p> <p>② <u>평신도 대표 3명</u><신설></p> <p>③ <u>연회장이 지명하는 1명</u><신설></p> <p>【000】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p> <p>【000】 제4조(직무) <신설></p> <p>① <u>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연회 내의 인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며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신설></u></p>	<p>연회에 교역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불성실한 교역자란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로 아래 각 호와 같다.<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오락 및 도박에 빠진 사람<신설> 2. 이중 직업을 가진 사람, 다만 미자립교회의 담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3.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사람 <신설> 4.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사람<신설> 5.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규정한 이단집단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단사상에 빠진 사람<신설> 6.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사람 <신설> 7. 불성실한 목회로 이임과 함께 교회를 폐쇄한 사람<신설> 8. 예배처소가 없는 교회의 교역자 <신설> 9. 주일 예배가 없는 교회의 교역자 <신설> <p>③ 조사한 결과 사안에 따라 시정 경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의 회부, 연회 심사위원회에의 고발 또는 연회장에게 직권으로 직임정지를 요청한다. <신설></p> <p>④ 모든 조사, 처리 비용은 해당 연회에서 부담한다.<신설></p> <p>【000】 제5조(위원회 소집)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장은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거나, 위원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②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연회장이 소집한다. <신설> 	
제 6 절 연회 사무완결	제 6 절 연회 사무완결	

현행	개정안	비고
<p>【406】 제111조(연회 사무완결의 절차) 연회는 다음 총문의 <u>각항을 감독이</u> 서기에게 묻고 이에 대해 서기가 답변함으로써 사무를 완결한다.</p> <p>① 연회에 대하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연회는 합법적으로 구성되었습니까? 2. 이 연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되었습니까? 3. 이 연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가 신원보증을 세웠습니까? 4. 모든 교역자의 품행과 직무상 처리에 무흠 여부를 심사하였습니까? <p>② 준회원에 대하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회원에 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2. 준회원에 계속된 이가 누구입니까? 3. 준회원 2년급에 진급한 이가 누구입니까? 4. 이미 목사안수 받고 준회원 2년급에 진급한 이가 누구입니까? 5. 준회원 2년급에 계속된 이가 누구입니까? 6. 다른 연회에서 이명 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 7. 다른 연회로 이명 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8. 금년에 국외선교사로 파송된 이가 누구입니까? 9. 국외선교사로 파송되어 가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10. 금년에 국외유학을 간 이가 누구입니까? 	<p>【406】 제111조(연회 사무완결의 절차) 연회는 다음 <u>총문을 연회장이</u> 서기에게 묻고 이에 대해 서기가 답변함으로써 사무를 완결한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준회원에 대하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u>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준필에 계속된 이가 누구입니까?</u> <신설> 7. 6호와 <좌동> 8. 7호와 <좌동> 9. 8호와 <좌동> 10. 9호와 <좌동> 11. 10호와 <좌동> 12. 11호와 <좌동> 	

현행	개정안	비고
<p>11. 국외유학을 계속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12. 국외유학에서 돌아온 이가 누구입니까? 13. 국외 감리교회로 이명 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14.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 15. 퇴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16. 금년에 신병으로 휴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17. 휴직이 계속되는 이가 누구입니까? 18. 휴직에서 복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19. 금년에 별세한 이가 누구입니까? ③ 정회원에 대하여 <이하 생략></p>	<p><u>13.</u> 12호와 <좌동> <u>14.</u> 13호와 <좌동> <u>15.</u> 14호와 <좌동> <u>16.</u> <u>퇴회된</u> 이가 <u>누구입니까?</u> <개정> <u>17.</u> 16호와 <좌동> <u>18.</u> 17호와 <좌동> <u>19.</u> 18호와 <좌동> <u>20.</u> 19호와 <좌동> <u>21.</u> <u>미파된</u> 이가 <u>누구입니까?</u><신설> ③ 정회원에 대하여 <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총회 제 1 절 총회</p> <p>【407】 제112조(총회) 총회는 감리회의 <u>입법과</u>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의회로서 감리회의 주요 정책과 주요 행정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선출된 <u>감독과 감독회장의</u> 취임식을 거행한다. <u>단, 입법 업무는 총회 안에 입법의회를 따로 설치하여 전담하게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총회 제 1 절 총회</p> <p>【407】 제112조(총회) 총회는 감리회의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의회로서 감리회의 주요 정책과 주요 행정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선출된 <u>연회장과 감독의</u> 취임식을 거행한다. <개정></p>	<p>‘단, 입법업무는’ 이하 삭제</p>
<p>【408】 제113조(총회의 구성) 총회 대표는 1,500명 이내로 하되 교역자, 평신도 동수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p>① 교역자 직능대표 : 현직 감독회장과 감독 및 당선자, 감리사 ② 평신도 직능대표 :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각 전국연합회장, 연회 실행위원</p>	<p>【408】 제113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u>총회는 교역자대표와 평신도대표 1,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하며, 총회대표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u> <개정></p> <p>① <좌동> ② <좌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③ <u>선출직 교역자 대표</u> : 정회원 수의 비율로 연회에 배정하여 연금, 전문성, 성별을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한다.</p> <p>④ <u>선출직 평신도 대표</u> : 정회원과 동수로 연회에 배정하여 임명된 년수와 전문성, 지방을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하되 30%는 여성 장로로 할 수 있다</p> <p>⑤ 총회 대표는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및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p> <p>⑥ 총회 대표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p> <p>⑦ 미과자 및 휴직자는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다.</p> <p>⑧ 총회 대표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차기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이는 제외한다.</p> <p>⑨ <u>각 연회별로 교역자, 평신도 각 10인씩을 총회 대표 후보로 선출한다.</u></p> <p>⑩ 정회원 총회 대표는 다른 연회로 이명 할 경우 총회 대표권을 상실한다.</p>	<p>③ <u>총회대표는 정회원 수의 비율로 연회에서 배정받아 지방별로 당연직을 제외한 교역자와 평신도 선출직 인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u>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명일 경우는 자유롭게 선출한다.<신설> 2. 2명일 경우는 50세 미만 1명, 50세 이상 1명<신설> 3. 3명 이상 5명일 경우는 여성 1명<신설> 4. 6명 이상 7명일 경우는 여성 2명<신설> 5. 다만 평신도 여성은 장로로 한다. <신설> <p>④ <삭제></p> <p>④ ⑤항과 <좌동></p> <p>⑤ ⑥항과 <좌동></p> <p>⑥ ⑦항과 <좌동></p> <p>⑧ ⑨항과 <좌동></p> <p>⑨ <u>총회 대표는 다른 연회로 이명 할 경우 총회 대표권을 상실한다.</u> <개정></p> <p>⑩ <u>선출직으로 2회를 연속하여 총회대표를 역임한 사람은 1회기를 쉬지 않고는 총회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u> <신설></p> <p>⑪ <u>입법의회 회원과 심사 및 재판위원은 총회대표가 될 수 없다.</u> <신설></p>	<p>③ 지방별 배정인원에 맞게 선출한다.</p> <p>④ ⑨항에서 이동, 총대후보선출</p> <p>⑩ 모든 총대동일적용, 총대 3회 연임불가</p> <p>⑪ 입법회원,심사,재판위원 겸직금지</p>

현행	개정안	비고
<p>【409】 제114조(총회 의장) <u>총회 의장은 감독회장이 된다.</u> 감독회장 유고시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나 감독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409】 제114조(총회 의장) ① <u>총회 의장은 감독이 된다.</u> <신설> ② <u>감독이 유고시 위임한 사람이나 연회장 중에 연급순, 연장자순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총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u> <신설></p>	<p>항 구분하여 신설</p>
<p>【412】 제117조(총회의 소집)</p> <p>① <u>총회는 2년에 1회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u> 소집 일시와 장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u>감독회장이 결정한다.</u> 다만, 회기 종료 시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u>감독회장의</u> 임기가 종료된 경우 직전 회기의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회기 종료 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소집 일시와 장소는 직전 회기 <u>감독회의</u>와 협의하여 결정한다.</p> <p>② 임시 총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 또는 총회 대표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u>감독회장이</u> 소집한다. 소집 일시와 장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협의하여 <u>감독회장</u>이 결정한다.</p>	<p>【412】 제117조(총회의 소집) <u>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u> <개정></p> <p>① <u>정기총회는</u> 2년에 1회 10월 중에 <u>감독이</u> 소집한다. 소집 일시와 장소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u>감독이</u> 결정한다. 다만, 회기 종료 시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u>감독의</u> 임기가 종료된 경우 직전 회기의 <u>연회장</u>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회기 종료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소집 일시와 장소는 직전 회기 <u>연회장회의</u>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p> <p>② 임시 총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 또는 총회 대표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u>감독이</u> 소집한다. 소집 일시와 장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협의하여 <u>감독이</u> 결정한다. <개정></p>	
<p>【413】 제118조(입법의회의 설치) <u>총회는 총회 안에 입법의회를 설치하여 입법업무를 전담하게 한다.</u> 입법의회의 조직과 직무는 법으로 정한다.</p>	<p>【413】 제118조(입법의회의 설치) <삭제></p>	<p>입법의회를 별도 의회로 설치</p>
<p>【414】 제119조(총회의 직무) <u>총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u></p> <p>① 감리교회의 총괄적 정책수립 : 총회는 감리교회의 부흥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여 연회와 지방회에 시달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p> <p>② 감리회 본부 설치 : 총회는 의결된 정책을 기획하고 연회를</p>	<p>【414】 제119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통해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감리회 내의 통신사업과 홍보사업을 위해 서울에 감리회 본부를 설치한다.</p> <p>③ 감독과 감독회장 선출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다.</p> <p>④ 감독과 감독회장 이·취임식 : 총회는 감독과 감독회장의 이·취임식을 한다. 다만, 회기 내에 총회가 개최되지 못해 취임식이 불가능한 경우 회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감독 또는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가장 먼저 열리는 총회에서 취임식을 한다.</p> <p>⑤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 총회는 교역자수급 및 고시를 위하여 총회 특별위원회로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를 두고 그 규정은 따로 정한다.</p> <p>⑥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을 설립하고 감리회에 속한 모든 토지와 건물 등 자산의 소유권을 보존하게 한다. 유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정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p> <p>⑦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을 설립하고 교역자의 은급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은급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p> <p>⑧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설립 : 총회는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p> <p>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설립 : 총회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사회복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p>	<p>③ <u>감독과 연회장</u> 선출 : <u>감독 및 연회장</u> 선거법에 따라 <u>감독과 연회장</u>을 선출한다. <개정></p> <p>④ <좌동></p> <p>⑤ <좌동></p> <p>⑥ <좌동></p> <p>⑦ <좌동></p> <p>⑧ 사회복지법인 <u>기독교대한감리회</u> 태화복지재단 설립 : 총회는 사회복지법인 <u>기독교대한감리회</u> 태화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u>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u> 태화복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개정></p> <p>⑨ <좌동></p>	<p>순서를 동일하게</p> <p>감리회→기독교대한감리회</p>

현행	개정안	비고
<p>⑩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장학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p> <p>⑪ 각 기관 이사와 위원 파송 :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기관에 이사와 위원을 파송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회는 감리회에서 설립한 법인이나 기관, 그리고 감리회와 관계된 기관에 이사 또는 대표를 파송한다. 2. 총회는 감리회와 관계된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이사를 파송한다. 3. 총회는 교회연합기관과 특수선교기관에 이사 또는 위원을 파송한다. 4. 총회에서 파송한 이어나 위원이 감리회의 정책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감리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가 이들을 소환할 수 있다. 다만, 총회가 단힌 후에는 감독회의에서 소환한다. 5. 총회가 직권상 파송한 이사는 파송된 기관의 임기에 관계없이 직권상 임기와 동일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총회는 이사의 파송을 취소한다. 다만, 총회가 단힌 후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파송을 취소한다. <p>⑫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교 또는 대학교 총장 인준 : 총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목원대학교 총장, 협성대학교 총장 등의 임명에 따른 인준을 한다. 인준을 받지 못한 총장은 즉시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렇게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각 총장의 인준은 총회에서 등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총회가 단힌 후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p>	<p>⑩ <좌동></p> <p>⑪ <좌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총회가 직권상 파송한 이사는 파송된 기관의 임기에 관계없이 직권상 임기와 동일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총회는 이사의 파송을 취소한다. 다만, 총회가 단힌 후에는 감독이 파송을 취소하고,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p>⑫ <좌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준한다.</p> <p>⑬ <u>입법의회 회원 선출</u> : 총회는 다음과 같이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을 선출한다.</p> <p>1. <u>총회는 총회 회원 중에서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으로 총회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회원을 연회별로 선출한다. 입법의회 회원은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한다.</u></p> <p>2. <u>연회별로 후보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을 순위를 정하여 선출한다.</u></p> <p>3. <u>연회 감독은 입법의회 회원이 선출되는 즉시 이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u></p> <p>4. <u>감독회장은 입법의회 회원이 확정되는 대로 연회별로 2명씩(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의 입법의회 공천위원을 선정하여 입법의회 각 분과위원을 공천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u></p> <p>⑭ <u>총회 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u></p> <p>⑮ <u>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u></p> <p>⑯ <u>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한다. 단, 연회추천 평신도위원은 가급적 법전문인으로 한다.</u></p> <p>⑰ <u>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임감독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단, 연회추천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u></p> <p>⑱ <u>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u></p>	<p>⑬ <삭제></p> <p>⑭ <u>총회 심사위원회는 제7편 재판법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연회장회의에서 추천한 법조인 2명을 2개 반으로 구성한다. <개정></u></p> <p>⑮ <u>총회 재판위원회는 제7편 재판법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연회장회의에서 추천한 법조인 2명을 2개 반으로 구성한다. <개정></u></p> <p>⑯ <삭제></p> <p>⑰ <u>총회 최고재판위원회는 제7편 재판법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6명(교역자 3명, 평신도 3명)과 연회장회의에서 추천한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u></p>	<p>⑬ 입법의회 대표 별도 선출</p> <p>⑯ 총회 특별심사위원회 폐지 ⑰→⑯으로 이동</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u>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u></p> <p>⑱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40명(교역자 20명, 평신도 2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전임감독 1명, 평신도 법조인 1명)으로 조직한다.</p> <p>⑳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교회 안의 각종 사건이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조정, 중재하기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u>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u>으로 조직한다.</p> <p>㉑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는 연회에서 지명하는 <u>20명(교역자 10명, 평신도 1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u>으로 조직한다.</p> <p>㉒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 조직 : 총회는 감리회 본부의 회계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된 감사들로 감사위원회를 조직한다. 감사는 10개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조직한다.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은 감사의 연속성을 위해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p> <p>㉓ 총회는 본부 사업보고, 회계보고 및 감사보고를 받는다.</p> <p>㉔ 선교연회 조직 : 총회는 <u>국내외적으로</u> 선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선교기반이 조성된 지역에 입법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u>선교연회에는 선교연회 관리자를 둔다.</u></p> <p>㉕ <u>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법조인</u>은 총회 회원이 아니어도 지명할 수 있다.</p> <p>㉖ 임시 총회의 직무는 임시 총회 소집 안전에 한한다.</p>	<p>⑰ <삭제></p> <p>⑱ <삭제></p> <p>⑲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u>44명(교역자 22명, 평신도 22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2명(전임연회장 1명, 평신도 법조인 1명)</u>으로 조직한다. <개정></p> <p>⑳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교회 안의 각종 사건이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조정, 중재하기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u>호남선교연회 1명, 감독이 지명하는 2명</u>으로 조직한다. <개정></p> <p>㉑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는 연회에서 <u>선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호남선교연회 1명, 감독이 지명하는 2명</u>으로 조직한다. <개정></p> <p>㉒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 조직 : 총회는 감리회 본부의 회계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된 감사들로 감사위원회를 조직한다. 감사는 10개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u>호남선교연회 1명</u>으로 조직한다.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은 감사의 연속성을 위해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u>연회장회의에서</u> 정한다. <개정></p> <p>㉓ <좌동></p> <p>㉔ 선교연회 조직 : 총회는 선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선교기반이 조성된 지역에 입법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개정></p> <p>㉕ <u>감독이 지명하는 법조인</u>은 총회 회원이 아니어도 지명할 수 있다.<개정></p> <p>㉖ <좌동></p>	<p>⑱ 행정재판위 폐지</p> <p>⑲, ⑰로 이동</p> <p>⑳, ⑱로 이동</p> <p>㉑, ⑲로 이동</p> <p>㉒, ⑳로 이동</p> <p>㉓, ㉑로 이동</p> <p>㉔, ㉒로 이동</p> <p>㉕, ㉓로 이동</p> <p>㉖, ㉔로 이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입법의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입법의회</p> <p>【420】 제125조(입법위원회의 조직) 입법위원회의 조직은 다음 각항과 같다.</p> <p>① 선출직 회원 : <u>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정수는 총회 회원의 3분의 1로 한다.</u></p> <p>② 직권상 회원 : <u>감독회장 및 각 연회 감독</u></p> <p>③ <u>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은 입법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u></p> <p>④ 임명직 회원 : <u>입법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이 중에서 감독회장이 임명한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u></p> <p>⑤ 선출직 회원 중 결원 및 이명자가 생기면(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참석불가를 입법위원회 개최일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때) 후보회원이 그 순위에 따라 지위를 계승한다.</p> <p>⑥ 입법위원회 대표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차기 입법위원회 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이는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입법의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입법의회</p> <p>【420】 제125조(입법위원회의 조직) 입법위원회의 조직은 <u>다음과 같다.</u> <개정></p> <p>① 선출직 회원 : <u>연회에서 각 지방별로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씩 선출한 사람으로 하며, 연회장이 교역자, 평신도 각 10명을 선임한다.</u><개정></p> <p>② 직권상 회원 : <u>감독 및 각 연회장과 선교연회관리자,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 (개정)</u></p> <p>③ <삭제></p> <p>④ <삭제></p> <p>③ ⑤항과<좌동></p> <p>④ ⑥항과<좌동></p> <p>⑤ <u>선출직 입법위원회 회원은 총회대표, 총회 심사위원, 총회재판위원을 겸할 수 없다.</u> <개정></p>	<p>③, ②항에 통합</p> <p>④ 항 삭제</p>
<p>【421】 제126조(입법위원회 회원의 임기) 입법위원회 회원의 임기는 총회 회원의 임기와 동일하다.</p>	<p>【421】 제126조(입법위원회 회원의 임기) 입법위원회 회원의 임기는 <u>2년으로 한다.</u> <개정></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424】 제129조(입법의회 개최 일시 및 장소의 결정) <u>감독회장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입법위원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정한다.</u></p>	<p>【424】 제129조(입법의회 개최 일시 및 장소의 결정) <u>감독</u>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입법위원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정한다. <개정></p>	<p>감독회장→감독</p>
<p>【425】 제130조(입법위원회의 소집) 입법위원회의 소집은 다음 각항과 같다.</p> <p>① 정기 입법위원회는 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는 연도 10월 중에 <u>감독회장</u>이 소집한다.</p> <p>② 임시 입법위원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u>결의를 거쳐 감독회장</u>이 소집한다.</p> <p>③ <u>감독회장은</u> 입법위원회 소집 일시, 장소, 그리고 상정 안건을 포함한 소집통보서를 입법위원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④ 입법사항이 없는 연도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u>감독회장</u>이 정기 입법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p>	<p>【425】 제130조(입법위원회의 소집) 입법위원회의 소집은 <u>다음과</u> 같다. <개정></p> <p>① 정기 입법위원회는 <u>매 2 년마다</u> 10월 중에 <u>감독이</u> 소집한다. <개정></p> <p>② 임시 입법위원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u>협의를</u> 거쳐 <u>감독이</u> 소집한다. <개정></p> <p>③ <u>감독은</u> 입법위원회 소집 일시, 장소, 그리고 상정 안건을 포함한 소집통보서를 입법위원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p> <p>④ 입법사항이 없는 연도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u>감독이</u> 정기 입법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p>	
<p>【426】 제131조(입법의회 의장) 입법위원회의 의장은 감독회장이 된다. 감독회장 유고시에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 중에서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426】 제131조(입법의회 의장) 입법위원회의 의장은 <u>감독이</u> 된다. <u>감독</u> 유고시에는 <u>감독이</u> 지명하는 <u>연회장이</u>,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u>연회장</u> 중에서 <u>연급순, 연장자순으로</u>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p>	
<p>【430】 제135조(입법위원회의 직무) 입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항과 같다.</p> <p>① 헌법개정</p> <p>② 법률과 정관, 규정(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p>	<p>【430】 제135조(입법위원회의 직무) 입법위원회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기독교타임즈)의 제정 및 개정</p> <p>③ 감리교회 산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의 정관 및 규정과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인준</p> <p>④ 고시과정, 전도사와 장로 과정의 제정과 개정</p> <p>⑤ 연회경계 조정 및 분할</p> <p>⑥ 외국 감리교회와 체결하는 협약의 인준</p> <p>⑦ 국내 연합기관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사항의 인준</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p>⑥ <좌동></p> <p>⑦ <삭제></p>	<p>⑦항은 '총실위 직무'로 이동</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입법의회 분과위원회</p> <p>【432】 제137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입법의회는 각 분야별 연구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조직한다.</p> <p>① 헌법연구위원회 : 헌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p> <p>② 교리적선언 및 사회신경연구위원회 : 교리적 선언과 사회신경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p> <p>③ <u>예문연구위원회 : 감리회의 각종 예문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u></p> <p>④ <u>교역자수급 및 고시연구위원회 : 교역자 수급 및 고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u></p> <p>⑤ <u>연회 및 지방회경계조정연구위원회 : 연회 및 지방회 경계를 조정하거나 선교연회 설치에 관한 연구 및 건의를 담당한다.</u></p> <p>⑥ 의회제도연구위원회 : 의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입법의회 분과위원회</p> <p>【432】 제137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입법의회는 각 분야별 연구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조직한다. <개정></p> <p>① <u>헌법연구 및 공천위원회 : 헌법에 관한 연구와, 공천 문제와 입법의회에 접수된 건의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u> <개정></p> <p>② 교리적선언 및 사회신경, <u>예문연구위원회 : 교리적 선언과 사회신경, 감리교회의 각종 예문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u> <개정></p> <p>③ <삭제></p> <p>③ <u>교역자수급 및 과정법연구위원회 : 교역자 수급 및 고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u> <개정></p> <p>⑤ <삭제></p> <p>④ <u>의회제도 및 행정연구위원회 : 교회 행정제도에 관한 연구와</u></p>	<p>①, ⑫항과 통합</p> <p>②, ③항과 통합</p> <p>④, ⑤⑥⑦통합</p>

현행	개정안	비고
<p>한 연구를 담당한다.</p> <p>⑦ <u>교회행정법연구위원회</u> : 교회 행정제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p> <p>⑧ <u>교회재산관리제도연구위원회</u> : 교회재산 관리 및 유지재단 운영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p> <p>⑨ <u>국·외 감리교회와의 협약체결연구위원회</u> : 국·외 감리교회와의 각종 협약체결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p> <p>⑩ <u>재판법연구위원회</u> : 재판법에 관한 문제점과 개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p> <p>⑪ <u>교역자인사관리 및 은급제도연구위원회</u> : 교역자의 인사관리 및 은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p> <p>⑫ <u>공천 및 건의안심사위원회</u> : 분과위원회 공천문제와 입법의회에 접수된 건의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p> <p>⑬ <u>장정개정위원회</u> : 장정개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장정개정안에 대한 확정 및 장정편찬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정·부서기를 둔다.</p> <p>1. 선출직 위원 : 연회별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1명</p> <p>2. 임명직 위원 : 감독회장이 임명하는 전문위원 4명(교역자, 평신도 각 2명)</p> <p>3. 장정개정위원회는 장정을 편찬한다.</p> <p>⑭ <u>장정유권해석 및 연구위원회</u> : 입법의회 기간에 회무와 관련하여 의퇴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 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연회별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법조인 1명 이상)을 둔다.</p>	<p><u>의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u> <개정></p> <p>⑦ <삭제></p> <p>⑤ ⑧ 항과 <좌동></p> <p>⑨ <삭제></p> <p>⑥ ⑩항과 <좌동></p> <p>⑦ <u>은급제도연구위원회 : 교역자의 인사관리 및 은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u><개정></p> <p>⑫ <삭제></p> <p>⑧ <u>장정개정위원회 : 장정개정위원회는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장정개정안에 대한 확정 및 장정편찬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정·부서기를 둔다.</u> <개정></p> <p>⑭ <삭제></p>	<p>⑦, ⑪항에서 이동</p> <p>⑫, ①항에 통합</p> <p>⑭->⑧으로 이동</p> <p>⑨ 내용 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p>⑮ 운영위원회 : 입법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한다.</p>	<p>⑨ <u>규정 및 규칙 위원회</u> : <u>규정 및 규칙위원회는 규정 및 규칙을 연구하고 심사한다.</u> <신설></p> <p>⑩ ⑮항과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0 장 총회 실행부위원회</p> <p>【434】 제139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p> <p>①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 선교연회 관리자,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p> <p>② 선출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 각 연회별로 총회 대표 중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p> <p>③ 당연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 총회 정·부서기 2명. 다만, 정서기는 총회 실행부위원회 서기를 겸한다.</p> <p>④ 본부 <u>감사</u>는 직책상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0 장 총회 실행부위원회</p> <p>【434】 제139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p> <p>①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 <u>감독과 각 연회장(미주특별연회 포함)</u>, 선교연회 관리자,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 <개정></p> <p>② 선출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 각 연회별로 총회 대표 중에서 교역자, 평신도 <u>중 1명, 미주특별연회 평신도 1명</u></p> <p>③ <좌동></p> <p>④ 본부 <u>감사위원장과 서기</u>는 직책상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개정></p>	<p>①, ② 미주특별연회 포함'</p> <p>감사 위원 참석 축소</p>
<p>【435】 제14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총회 안건의 예비심사</p> <p>② 총회, 입법의회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안건 협의</p> <p>③ 총회가 단행 후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및 새로 발생한 중요 안건의 심의 처리</p> <p>④ 감리회 본부의 신년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의 평가분</p>	<p>【435】 제140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p> <p>① <u>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예비 심사한다.</u> <개정></p> <p>② <u>총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협의한다.</u> <개정></p> <p>③ <좌동></p> <p>④ <u>감리회본부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다.</u> <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석</p> <p>⑤ 감리회 본부의 신년도 예산편성 및 전년도 결산 심의</p> <p>⑥ 감리회 본부의 사무행정 내규 제정 및 개정</p> <p>⑦ <u>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u>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u></u></p> <p>⑧ <u>감독회장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임기를 마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u></p>	<p>⑤ <u>감리회본부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승인한다. <개정></u></p> <p>⑥ <좌동></p> <p>⑦ <u>감독의 궐위시 또는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장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장(전직 연회 감독 포함)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직무 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u></p> <p>⑧ <삭제></p> <p>⑧ <u>연회에서 추천된 총회 심사위원 및 재판위원과 연회장 회의에서 추천된 법조인을 총회 심사위원 및 재판위원과 총회 최고재판위원으로 선출한다. <신설></u></p> <p>⑨ <u>국내 연합기관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사항의 인준<개정></u></p> <p>⑩ <u>총회가 단행 후 발생하는 사항 중 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신설></u></p>	<p>⑦ 감독 직무대행 선출방법</p> <p>⑧ 항은 '선거법'으로 이동</p> <p>⑧ 입법의회에서 이동</p> <p>⑨항 신설</p>
<p>【436】 제141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 실행</p>	<p>【436】 제141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 실행</p>	

현행	개정안	비고
<p>부위원회는 정기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u>감독회</u>장이 소집한다.</p> <p>① 정기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여 감독회장이 소집한다.</p> <p>②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독회의 또는 실행부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u>감독회</u>장이 소집한다.</p>	<p>부위원회는 정기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u>감독</u>이 소집한다. <개정></p> <p>① 정기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여 <u>감독</u>이 소집한다. <개정></p> <p>②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u>연회장</u>회의 또는 실행부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u>30일</u> 이내에 <u>감독</u>이 소집한다. <개정></p> <p>③ <u>제2항에 의한 임시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감독은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독이 이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연회장 중 연급·연장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신설></p>	<p>③ 임시총회 소집요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1 장 총회 특별위원회</p> <p>【437】 제142조(총회 특별위원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두어 해당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p> <p>① 행정조정위원회</p> <p>② 선거관리위원회</p> <p>③ 재판위원회</p> <p>④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p> <p>⑤ <u>장정연구위원회</u></p> <p>⑥ <u>장정유권해석위원회</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1 장 총회 특별위원회</p> <p>【437】 제142조(총회 특별위원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두어 해당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u>심사 및</u> 재판위원회 <개정></p> <p>④ <좌동></p> <p>⑤ <삭제></p> <p>⑥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행정조정위원회</p> <p>【439】 제144조(총회 행정조정위원회의 구성)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선임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u>감독회</u>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행정조정위원회</p> <p>【439】 제144조(총회 행정조정위원회의 구성)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선임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u>호남선교연회 1명</u> 및 <u>감독</u>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선거관리위원회</p> <p>【444】 제149조(선거관리위원회)</p> <p>① 조직 : 각 연회 교역자, 평신도 각 2명과 <u>감독회장</u>이 지명한 2명으로 조직한다.</p> <p>② 임무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선거관리위원회</p> <p>【444】 제149조(선거관리위원회)</p> <p>① 조직 : 각 연회 교역자, 평신도 각 2명과 <u>감독</u>이 지명한 2명으로 조직한다.</p> <p>② 임무 : <u>연회장</u> 및 감독 선거법에 준한다.</p>	<p>감독회장→감독</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재판위원회</p> <p>【445】 제150조(구성) 총회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 내에 총회 심사위원회, 총회 재판위원회, 총회 특별심사위원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구성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u>심사 및</u> 재판위원회 <개정></p> <p>【445】 제150조(구성) 총회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 내에 총회 심사위원회, 총회 재판위원회, <u>총회 최고재판위원회</u> 등 3개 위원회를 구성한다.</p>	<p>재판 위원회 간소화</p>
<p>【446】 제151조(조직) 5개 위원회의 조직은 재판법에 준한다.</p>	<p>【446】 제151조(조직) <u>3개</u> 위원회의 조직은 재판법에 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 5 절 장정연구위원회</u></p> <p>【451】 제156조(장정연구위원회) 총회는 장정연구위원회를 두어 장정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한다.</p> <p>【452】 제157조(조직) 감독회장이 임명하는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으로 구성하며 감독회장이 임명하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전문위원을 겸한다.</p> <p>【453】 제15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에서 총회까지로 한다.</p> <p>【454】 제159조(직무) 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장정에 대한 연구</p> <p>② 헌법 및 법률과 정관, 규정, 규칙, 문서서식의 조문 연구</p>	<p style="text-align: center;"><u>제 5 절 장정연구위원회</u> <삭제></p> <p>【451】 제156조(장정연구위원회)<삭제></p> <p>【452】 제157조(조직) <삭제></p> <p>【453】 <삭제></p> <p>【454】 <삭제></p> <p>① <삭제></p> <p>② <삭제></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③ 차기 장정개정위원회 준비</p>	<p>③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u>제 6 절 장정유권해석위원회</u></p> <p>【455】 제160조(장정유권해석위원회) 총회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두어 장정유권해석을 한다.</p> <p>【456】 제161조(조직)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과 감독회장이 감독회의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법조인 3명으로 조직한다. 다만, 법조인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집사 이상이어야 한다.</p> <p>【457】 제162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458】 제163조(직무)</p> <p>①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p> <p>② 유권해석의 심리와 결정은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위원장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금지 또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p> <p>④ 누구든지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p> <p>⑤ 유권해석의 합의는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가지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최다 의견수로 결정한다.</p> <p>⑥ 다음 각 호의 유권해석은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p>	<p style="text-align: center;"><u>제 6 절 장정유권해석위원회</u> <삭제></p> <p>【455】 제160조(장정유권해석위원회) <삭제></p> <p>【456】 제161조(조직)<삭제></p> <p>【457】 제162조(임기)<삭제></p> <p>【458】 제163조(직무)<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p><u>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감독회장이 재 결의를 요청하는 경우</u> 2. <u>중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u> 3. <u>중전의 유권해석과 유사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u> 4. <u>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경우</u> 		
<p>부 록 : 의사진행 규칙</p> <p>【459】 제1조(안건심의) 안건심의를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고 동의와 재청을 받아 이를 표결에 부친다.</p>	<p>부 록 : 의사진행 규칙<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개의(開議) · 산회 · 폐회</u></p> <p>【000】 제1조(개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의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당회는 개최일자를 2주 전에 후보 등을 통해 공고한 후 출석한 회원으로 개의한다.</u> 2. <u>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u> ② <u>각 의회의 의장은 공고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u> ③ <u>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u> 	<p>전체 개편으로 <개정></p>
<p>【460】 제2조(의제성립) 의제는 동의와 1인 이상의 재청으로 성립된다.</p>	<p>【000】 제2조(산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공고된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u> 	

현행	개정안	비고
	② <u>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u> ③ <u>모든 회의가 끝났거나 회기가 끝난 후에는 폐회를 선포한다.</u>	
【461】 제3조(변안동의) 변안동의는 종전의 의안을 발의한 회원이 동의를 해야 하고 정족수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안동의는 한 회기 내에서만 가능하다.	【000】 제3조(회의의 공개) <u>각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개의 시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462】 제4조(긴급동의) 회원의 안전이나 기타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동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중인 안건을 보류하고 이 안건부터 심의한다.	제2장 발의·철회·변안 【000】 제4조(의안의 발의) ① <u>헌법 및 법률개정안을 제외한 의안은 각 의회의 재석회원 1%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다.</u> ② <u>의안을 발의하는 회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u>	
【463】 제5조(안건의 표결 순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개정안 또는 수정안이 성립된 경우에는 최후에 발의한 개정안 또는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다만, 인사에 관한 안건은 원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000】 제5조(동의) <u>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재청 1명 이상으로 의제가 된다.</u>	
【464】 제6조(발언의 허가) 발언하고자 하는 회원은 의장에게 발언을 요청하고 의장의 발언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야 한다.	【000】 제6조(긴급동의) <u>회원의 안전이나 기타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동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 중인 안건을 보류하고 이 안건부터 심의한다. 다만 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심의할 수 있다.</u>	만국통상회의법 17장 4항 3호
【465】 제7조(규칙발언) 안건처리가 의사진행 규칙에 위반될 때에 회원이 요청하는 규칙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우선권을 허락하여야 한다.	【000】 제7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u>각 의회의 회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u>	

현행	개정안	비고
	<p><u>대하여는 발의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당해 의회 및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u></p>	
<p>【466】 제8조(발언권의 보장) 발언권을 허락받은 회원의 발언은 다른 회원에 의해 정지될 수 없으며 정회로 발언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속회 즉시 발언을 계속할 수 있다.</p>	<p>【000】 제8조(번안)</p> <p>① <u>번안동의를 의안을 발의한 자가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자 및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② <u>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를 상급의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u></p>	
<p>【467】 제9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발언권을 허락받은 회원이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할 경우 의장은 이를 정지시킬 수 있다.</p>	<p>【000】 제9조(일사부재의) <u>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u></p>	
<p>【468】 제10조(찬반 토론의 균형) 의장은 찬반 토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찬반 쌍방의 발언을 공평하게 허락한다. 이때에 발언자는 찬반 어느 편인지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의사와 수정</p> <p>【000】 제10조(안건심의) <u>각 의회 및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 발의 및 동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토론을 거쳐 표결한다.</u></p>	
<p>【470】 제12조(질의와 토론의 종결) 질의와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의장이 판단하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언하고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토론 종결은 발의자 이외의 회원이 발의할 수 있다.</p>	<p>【000】 제12조(수정안의 표결순서)</p> <p>① <u>동일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한다.</u></p> <p>② <u>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때는 원안을 표결한다.</u></p>	
	제4장 발언	

현행	개정안	비고
<p>【471】 제13조(의결 정족수) 각 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법으로 이를 따로 규정한 이외에는 다음과 같다.</p> <p>① 당회 : 당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구역회 : 구역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지방회 : 지방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과정고시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위원회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연회 : 연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총회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가 등록한 후 개최하고 등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000】 제13조(발언의 허가)</p> <p>① <u>회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② <u>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하는 경우 의장은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u></p>	
<p>【472】 제14조(표결안건의 선포) 표결하고자 할 때는 의장이 표결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표결안건의 제목이 선포된 후에는 어느 회원도 발언할 수 없다.</p>	<p>【000】 제14조(발언의 계속) <u>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회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회의가 속회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u></p>	
<p>【473】 제15조(표결방법) 표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p> <p>① 주요 안건의 표결은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p> <p>② 이의가 없는 경우 기립하거나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p> <p>③ 의장이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p>	<p>【000】 제15조(규칙발언) <u>안전처리가 의사진행 규칙에 위반될 때에 회원이 요청하는 규칙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우선권을 허락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비고
④ 인사에 관한 안건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		
【474】 제16조(투표결과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000】 제16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u>모든 발언은 의제를 넘어서는 안 되며,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u>	
【475】 제17조(일사부재의의 원칙) 그 회기 중 일단 의결된 안건은 다시 재론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다만, 번안동의는 제외)	【000】 제17조(찬반 토론의 균형과 통지) <u>의장은 찬반 토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찬반 쌍방의 발언을 공평하게 허락한다.</u> ① <u>토론하고자 하는 회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② <u>의장은 통지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u>	
	【000】 제18조(의장의 토론참가) <u>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u>	
	【000】 제19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u>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u>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장 표결</u></p> <p>【000】 제20조(의결정족수)</p> <p>① <u>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 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u></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현행	개정안	비고
	<p>【000】 제21조(표결의 선포)</p> <p>① <u>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u></p> <p>② <u>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u></p>	
	<p>【000】 제22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p> <p>① <u>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u></p> <p>② <u>위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u></p> <p>③ <u>각 의회, 위원회, 이사회의 위원 및 이사는 자기 및 가족과 관계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나 이사회의 토론이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u></p>	
	<p>【000】 제23조(표결방법)</p> <p>① <u>표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u></p> <p>② <u>헌법 개정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u></p> <p>③ <u>인사에 관한 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u></p> <p>④ <u>제2항과 제3항의 안건을 제외하고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u></p> <p>⑤ <u>표결은 찬성부터 묻는다.</u></p>	
	<p>【000】 제24조(표결결과선포) <u>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u></p>	

현행	개정안	비고
	<p>【000】 제25조(무기명투표절차)</p> <p>① <u>무기명투표할 때에는 각 회원은 먼저 명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u></p> <p>② <u>무기명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투표위원으로 하여금 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u></p> <p>제26조(투표용지의 수) <u>투표용지의 수가 명부를 확인한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회의록</u></p> <p>【000】 제26조(회의록)</p> <p>① <u>각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개의·회의증지와 산회의 일시</u> 2. <u>의사일정</u> 3. <u>출석회원의 수 및 성명</u> 4. <u>예배에 관한 사항</u> 5. <u>부의안건과 그 내용</u> 6. <u>의장의 보고사항</u> 7. <u>각종 보고서</u> 8. <u>발언요지</u> 9. <u>표결수</u> 10. <u>회원의 발언보충서</u> 11. <u>서면질문과 답변서</u> 12. <u>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현행	개정안	비고
	② 회의록에는 의장, 서기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 (2015.10.30)</u></p> <p>【4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p> <p>【485】 제2조(경과조치) 이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각 위원회의 임기는 이법 이전의 법에 따른다. <신설></p> <p>【485】 제3조(경과조치) 412단 제 117조(총회의 소집) 제1항의 직전 연회장회의는 제32회 총회 회기 안에는 직전 감독회의로 한다.<신설></p> <p>【486】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의 감독회장과 감독은 구법에 따른 임기를 보장하며,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p>	이전 부칙 하단에 추가